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비교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미 숙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비교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Perception
on the Use of Paraprofessionals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ISP
in Gwangju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미 숙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비교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미 숙

이미숙의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iv
그림목차	vi
ABSTRACT	vii
I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7
1.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7
1)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도입 배경	7
2)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법적 근거	8
2.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	10
1) 유급특수교육보조원	11
2) 장애통합보조원	23
3) 공익근무요원	26
3. 공익근무요원 제도	26
1)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28
2)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30
3)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32
4)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34
5)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36
6)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38

4. 관련 선행연구 고찰	39
III. 연구방법	47
1. 연구설계	47
2. 연구대상	47
3. 연구도구	48
4. 연구절차	50
5. 자료분석	51
IV. 연구결과	52
1.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및 역할	52
1) 공익근무요원의 학력	52
2)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적절한 사람	53
3) 공익근무요원 명칭의 적절성	53
4)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적절한 이유	54
5) 공익근무요원의 자질	54
6) 장애아동 지원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중요 역할	55
7)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관련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갈등	56
8)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관련된 상담 대상	57
9)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	58
2.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배치	59
1) 공익근무요원의 양성 교육방법	59
2) 공익근무요원의 연수내용	60
3) 공익근무요원의 임기	61
4)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기초과정	62
5)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연수 심화과정	62
6)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연수 과정의 만족도	63
7)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운영의 장점	63
3.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65

1)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	65
2)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관리 방법	65
3)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관리	66
4)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효과적인 영역	67
5)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	67
6) 공익근무요원의 평가자	68
7)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장소	69
8)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	69
7) 공익근무요원과 지원영역별 활동계획	71
4. 공익근무요원 운용에 대한 기타의견	71
1) 특수교사 의견	71
2) 공익근무요원의 의견	72
V. 논의	74
1.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및 역할	74
2.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배치	77
3.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79
VI. 결론	83
1. 결론	83
2. 제언	85
참고문헌	86
부 록	89

표 목 차

<표 II-1>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14
<표 II-2>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내용 및 시수	16
<표 II-4> 연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계획	19
<표 II-5> 2007년 전국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19
<표 II-6> 2006~2008 광주광역시 교육청 유급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20
<표 II-8> 장애통합보조원의 역할	24
<표 II-9> 장애통합보조원 교육 연수	25
<표 II-10> 광주광역시 장애통합보조원 특수학교(급) 배치현황	25
<표 II-1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0
<표 II-12>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30
<표 II-13> 복무분야 및 소집순위	36
<표 II-14> 2006~2008 광주광역시 장애학생보조분야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36
<표 II-15> 광주광역시 공익근무요원 특수학교(급) 배치현황	36
<표 II-16> 관련 선행연구 목록	44
<표 III- 1> 광주광역시 공익근무요원 특수학교(급) 배치현황	47
<표 III- 2> 연구대상자의 기초사항	49
<표 III- 3>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50
<표 IV- 1> 공익근무요원의 학력	52
<표 IV- 2>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가장 적절한 사람	53
<표 IV- 3>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의 적절성	53
<표 IV- 4>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적절한 이유	54
<표 IV- 5> 공익근무요원의 자질	55
<표 IV- 6>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중요 역할	56
<표 IV- 7> 공익근무요원의 역할과 관련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갈등	57
<표 IV- 8>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관련된 상담 대상	58
<표 IV- 9>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	58

<표 IV-10> 공익근무요원 양성 교육방법	59
<표 IV-11> 공익근무요원의 연수내용	60
<표 IV-12> 공익근무요원의 임기	62
<표 IV-13>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기초과정의 적정 시간	62
<표 IV-14>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심화과정	63
<표 IV-15>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과정 만족도	63
<표 IV-16> 공익근무요원 배치·운영의 장점	64
<표 IV-17>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시간	65
<표 IV-18>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관리 방법	66
<표 IV-19>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관리 방법	66
<표 IV-20>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효과적인 영역	67
<표 IV-21>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	68
<표 IV-22> 공익근무요원의 바람직한 평가자	69
<표 IV-23> 공익근무요원의 적절한 배치 장소	69
<표 IV-24>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근무자세	70
<표 IV-25> 공익근무요원과의 지원영역별 활동계획	71

그림목차

<그림 Ⅱ-3> 특수교육보조원의 선정 및 운영절차	17
<그림 Ⅱ-7>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선정절차	23

ABSTRACT

*A Comparison of Perception
on the Use of Paraprofessionals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ISP
in Gwangju*

Misuk Lee

Advisor : Seunghee Lee,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assistant system between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introduced as special education assistant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o present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assistant system. The specific thing to be considered i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qualifications, roles, education, arrangement, usage and management of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For the study, we targete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in special elementary, middle secondary and high schools in Gwangju where service personnel system is used, distributed a total 194 copies of the questionnaire (108 copies and 86 copies, respectively) but collected only 153.

As results of the study, we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s in the qualifications and roles of the service

personnel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service personnel themselve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swered that the personnel should have educational background of child care and social welfare at college while the personnel answered that they should have educational background of high school majoring in child care and social welfare. In respect to appropriateness of the title of special education assistant, both the subjects perceived that it is appropriate to clarify the different roles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personnel. As a qualification of the personnel, they answered that they should be abundant understanding and of a service mind. For the main roles of the personnel, they answered that they should manage adjusting techniques and provide assistance during class based on basic understanding of problematic behaviors. For the conflicts between the subjects relating to roles of the personnel, most of the service personnel answered that there was no conflict whil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swered that they had much conflict with them in moving-out, safety, support of problematic behavior management, an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In counselling about the conflict, special education teachers seek for help from special education teachers from other special schools while the service personnel answered that they ask help from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arge. For how to direct the roles of the service personnel, special education teachers give instructions every day to the assistants while the service personnel follows the instructions presented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training and arrangement for the personnel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personnel. They answered that the personnel should complete training organized by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training should deal with understanding of features of each

disability,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problematic behaviors, and management of adjusting techniques. Both of them perceived that the term of the personnel should be one year and 60 hours of introductory training should be given. They perceived that the job training is somewhat helpful in special education and helping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y in excessive behaviors or being out of their seats during outdoor activities and teaching assistance is a main advantage of the personnel. Third, when perceptions on use and management of the assistant system were compared, both of the groups perceived that they should assist during regular working time, teachers should provide instructions of to assistance and assistants should record them. Both of the groups answered that education offices should select and arrange them but schools should manage them autonomously. They answered that the personnel system is helpful in field trips, personal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problematic behaviors. In respect to responsibility, special teachers answered that teachers and assistants should be responsible together while the personnel answered that the assista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students. For desirable evaluators of the assistants, both of the groups answered that they are special teachers. And both of the groups answered that special education classrooms are appropriate places to arrange the personnel. Special teachers considered manners and basic working attitude as important while the personnel considered understanding of individual needs and valu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helping them to function independently as important. For the activity plan, special teachers made plans once a week and gave an instruction, and the assistants did their task according to task tables presented by the teacher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as this

study interviewed only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personnel only in special schools in Gwangju,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results for other regions. Second, as the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has been arranged as special education assistants since 2006, there has been was little research on them. Therefore, we need further studies on their roles, use and job satisfaction. Third, little prior training and job training have been given to the assistants arranged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with disability and enhanc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So, quality training to enhance understanding of features of each disability, management of problematic behaviors and adjusting behaviors (personal management, putting on and off of ones' clothes, and table manners) should be expand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이 통합된 교육환경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통합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이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의 개혁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통합교육학회, 2006). 이러한 가치와 철학적 기반 위에 최근 장애학생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그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지원 즉, 교육과정적 통합까지 추구한다. 장애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표찰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나이에 맞는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사소통과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이소연·박은혜, 2006). 이러한 통합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장애아동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개발(박승희, 1999, 2002; 방명애, 1998), 장애이해 교육 및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국립특수교육원, 2004; 김수연, 1996; 오선영, 2000) 등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윤숙·김수연, 2007에서 재인용).

그러나 통합교육의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 일인이 교육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고 교사의 업무 과다와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개별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대부분 다양한 장애 특성과 개인차가 심한 중도·중복 장애학생들로 교사 일인이 학급의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모두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국립특수교육원, 2002a).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통합교육의 활성화에 어려움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 인력의 투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특수교육발전 5개년(’03~’07) 종합대책 수립 기초연구」(박승희·강영택·박은혜·신현기·이효신·정동영, 2001)에서

통합교육의 기회 확대 그리고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보조교사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 방안 연구」(강경숙·강영택·김성애·정동일, 2002)를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제의 전국적인 도입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역할, 선발, 양성과 배치, 활용 및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제2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유급의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운영했고 이러한 연구들에 힘입어 2004년부터 국고에서 3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현장에 1,000여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투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1학기 현재 6,241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2008년 제3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8~'12)에서는 특수교육 교사, 일반교육 교사 및 특수교육보조원 협력 모형 및 특수교육 보조원 관리 지침을 연구 개발하여 '0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이와 같이 특수교육 관련자들의 연구와 계획을 통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가 현실화되고 정착되면서 특수교육보조원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에게 교육적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통합되는 기회가 확장되고 교과 및 다양한 활동 참여의 양과 질이 증가되었다. 또한 교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계획·수업·자문 및 학생 사후 평가 등에 할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교육보조원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칫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전문적인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경우 단편적인 도움만 제공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교사의 교육내용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경우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과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역할을 소극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질 부족으로 인해 담임교사에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잠재적인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박승희·장혜성·나수현·신소니아, 2007). 박미경과 강경숙(2004)은 이러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법제화 및 역할의 다양성 인식,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 및 특수교육보조원 관리에 대한 훈련제공, 관련인사들과의 역할 분담 및 연수 실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 보급,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연수 및 훈련 강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김선영(2006)의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이를 통한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조화는 특수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데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얼마나 협력하는가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영숙(2003), 이인순(2005), 변성희(2006), 김현정(2008) 등의 관련 선행 연구들이 초등학교 또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사와의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용에 대한 인식차이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유급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한정된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폭넓은 연구를 위해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과 특수교사와의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앞으로 확대 실시될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배치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① 특수교육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②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이소현·박은혜, 2006). 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

③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5항).

④ 특수학급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1항).

⑤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4항).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란 특수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속해 있는 특수학급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를 지칭한다.

⑥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이란 특수교육 요구 아동에게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장면(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담당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본 연구에서의 특수교육보조원은 2006년부터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담당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⑦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9항). 본 연구에서의 공익근무요원은 2006년부터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담당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예: 직무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지원의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타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병무청을 통해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예: 배치기관, 교육프로그램

내용, 자격기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유형(유급특수교육보조원, 장애통합
보조원 등)의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1)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도입 배경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교육의 의미가 확대되고 방향이 전환되면서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이 비교적 용이한 경도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제고 뿐 아니라 과거 교육적 수혜에서 배제되어 왔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도 통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추세에 의해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박은혜, 2002). 이에 개별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육 현장에 보조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주영 등(2001)은 ‘중등 특수학급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수학급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보조원의 안정적인 배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현재 학급 상황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학급의 수업, 현장학습 및 사회적응 훈련, 자료준비 및 제작, 학생보호 및 신변관리 지도와 같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극복하고 장애학생 개인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보다 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특수교육계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팀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제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강경숙·김용욱, 2004).

2)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852호)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든 규정 사항들이 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은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3 (학습권)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조항은 장애가 교육의 저해 요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

중등 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책을 밝히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59조(통합교육)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 절차, 교육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3항에서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보조 인력의 지원)에서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인력 채용에 관한 업무,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업무, 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인력 수급 및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업무, 보조인력 활용에 관한 교원 및 보호자 교육 업무, 기타 교육감이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조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정보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현장체험 학습·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활동 등에 필요한 보조 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인적자원 정보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보조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들은 통하여 장애학생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특별한 욕구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제 도입은 기본 법률에 충분한 법적 근거 하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2002년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대책 수립 기초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 도입방안이 제시되었고, 2003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4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

여 특수교육보조원이 전국에 배치되었다.

2.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인적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교육청에서 소속되어 일정 연수과정을 마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적응을 지원으로 장애학생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강화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이 있다.

둘째,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SK그룹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재원으로 장애학생 교육환경 및 사회적 능력향상을 지원하고 통합교육보조원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질 높은 보조원을 양성하여 장애학생의 인권·교육권 확대를 지역사회통합 실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단을 만들어 지원·파견하고 있다.

셋째,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 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 199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특수교육 분야 활용방안과 관련해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병무청은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특수교육 현장에 장애학생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은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젊은 이들이 장애학생과 2년이 넘는 기간을 생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장애인의 전사회적인 통합의 확산을 위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으로 자발적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

이나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화 지향적이어야 하는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또한 특수교육기관의 자원봉사자 활용확대의 추진목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장애학생 생활지도 및 학습보조 등 관련자원 봉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국민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을 통한 자원봉사자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특수학교에서 활동할 때 교장, 교사, 직원, 장애인, 학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때 자원봉사자는 교직원 및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며 장애학생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특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는 인근지역 사회 주민, 대학교 혹은 교육학 관련 학과 졸업생, 장애학생의 부모 등 다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봉사명령자의 활용이다.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인 장애인 시설,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관 등을 지원한다. 사회봉사명령자의 역할로는 식사지도, 수업보조, 신변처리, 청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인적 자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 중 유급특수교육보조원, 장애통합보조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유급특수교육보조원

저마다 독특한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을 지원하여 그 요구를 충족하고, 교육의 효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기회 확대와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2004년부터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다.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장면에서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할 경우, 보조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특수교사와 보조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보조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보조인력의 자격)에서 '영 제29조 제5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6)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시·교육청이 주관한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장기준으로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학과 출신자, 보육교사·사회복지자 자격소지자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자나 특수교육요구 학생의 보호자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경숙 등(2002)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최소한의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자 즉,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자와 장애학생이나 학교에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강제적으로 피해나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자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의 이상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① 특수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갖춘 자와 교육기관의 종사자
- ②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최우선 임용;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는 임용 이후 직무연수 면제)
- ③ 유아교육교사를 포함한 일반교사 자격 소지자
- ④ 보육교사, 사회 복지사 자격소지자(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 5조에 근거한 생활지도원의 자격이 있는 자)
- ⑤ 대학의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자, 특수아동지도사, 언어치료-교육 지도사, 특수아 미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수지한 자
- ⑥ 교육, 심리, 사회복지, 치료학과 등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력학과 출신자
- ⑦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중 공익근무요원이나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지원한 병역 특례자
- ⑧ 장애학생의 부모
- ⑨ 기타 장애 학생 교육에 관심 있는 자

다음으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특수학교(급) 교사들은 여러 형태의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대한 활용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서 학급의 교사와 보조원의 역할 규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나 미묘한 심리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명확한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02a). 즉, 특수교육현장에서 교사와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조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특수교육의 질 높은 교육적 서비스와 서로 간 갈등의 요소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 보조원의 역할을 설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교사가 부재중일 때, 다른 교사의 감독이나 지시 없이 교육에 임하는 것이나 부모와 상담하는 것 등은 보조원의 지위와 자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역할과 보조원의 역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직무분석표를 만들어 활용하되, 직무 과제의 내용은 학교 및 학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직무분석표에는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 즉 개인적인 욕구 지원(일상생활 관련 신변처리), 학업관련 지도(수업활동, 자료제작 등), 건강 및 안전지도(등하교 지도, 이동 지도 등), 문제행동 지도(자리이탈 등), 의사소통 등에서 정규교사가 할 일, 특수교육보조원이 할 일, 그리고 정규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공동으로 할 일 등을 정하여 그들의 업무가 충돌하거나 특수교육보조원이 정규교사의 업무를 침범하는 등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보조인력의 역할)에서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 인력의 역할은 첫째,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보조 역할을 한다. 둘째,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지도, 신변처리 지도, 급식 지도, 교내외 활동지도, 등하교 지도 등의 보조 역할을 맡는다. 셋째, 교사가 위임하지 않은 교육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의 행정업무 또는 수업을 대행하거나 기타 교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의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특수교육

보조원은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하고 정규교사의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 수행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등을 지원한다.
- ②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 ③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를 지원한다.

김주영 등(2001)은 보조원의 역할을 수업 지원, 현장학습 지원, 자료제작 지원, 학습 보호 및 신변관리와 지도 등 어디까지나 정규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인진과 박승희(2001)는 다양한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의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을 <표 II-1>과 같이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표 II-1>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역할의 영역		주요 역할의 예
1	사무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전반적인 사무직무 : 서류 작성하기, 복사하기, 회계 및 금전관리 하기, 간담부름하기 · 교실의 전반적인 사무직무 : 서류작성하기, 문서 교정하기, 교재물 복사하기
2	개인적 욕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착용 돕기, 신변처리, 먹기,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사용하기
3	건강 보호 및 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튜브섭식하기, 도뇨관 삽입, 인슐린 투입, 흡입약 투약 · 학교 내 환경의 위험에서 보호, 학교 내 장소 이동 중 안전보호
4	이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으로부터 안전보호, 쉬는 시간과 다른 장소로 이동 중 안전보호
5	보조 장비 사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하는 것 돕기

<표 II-1> 계속됨

역할의 영역		주요 역할의 예
6	의사소통 지원	· PECS 등 의사소통 체계개발해주기, 의사소통 체계 이해하기, 일반아동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체계 이해하도록 지원하기
7	행동지원	· 문제행동 다루기, 강화 제공하기, 다양한 행동수정 사용하기, 토근주기, 피트백 주기, 칭찬하기, 오류 정정하기, 긍정적 행동 지원하기
8	교수적 지원	· 학생들의 수행수준평가, 기초선검사 실시, 발달상황 체크하기, 진보에 대한 자료 수집하기, 학생진보에 대하여 교사 및 전문가와 의사소통하기 ·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장·단기 목표설정 정보를 제공하기,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 수업내용 및 자료 수정하기, 수업계획하기, 교수자료 준비하고 제작하기 · 교육프로그램 실행하기, 수업보조하기 · 시험보기(예: 철자법, 수학 문제 등) · 교수활동 중에 학생의 수행을 기록하고 보고하기 · 학생파일 정리 및 기록하기 · 일반학생과의 상호작용 유도하기
9	팀의 구성원	· 팀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기; 적절한 의사소통, 문제해결하기
10	가족과의 상호작용	· 가족과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하기; 학생 정보 제공, 진보에 대해 보고하기, 행동문제 다루는 방법 공유하기

출처 : 전인진·박승희(2001). 보조교사의 역할규명과 순기능 및 역기능에 관한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36(3), 233-265. (p. 247)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장애학생에게 여러 가지 활동의 지원을 하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은 그 자질에 따라 장애학생에게서 나오는 교육적 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은 단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지시 하에 활동하지만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장애아동 교육의 철학과 지도 방향을 가진 준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 장애아동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할 때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협력자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승희 등(2001)은 보조원을 전국 4년제 대학 중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양성할 것(최소한 교육기간 : 6개월 320시간의 특수교육 및 관련기초 과목들)을 제안하고 있으

며, 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수교육보조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권하고 있다.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선발은 유급보조원의 경우는 시·도 교육청이나 시·군·구 교육청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훈련 기관과 훈련 내용은 무급과 유급을 구분하여 유급보조원은 훈련 내용과 방법, 기간을 내실 있게 실시한다. 또한 유급보조원의 경우에는 120시간 이상의 훈련시간을 확보하여 훈련하도록 제시하였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장애영역별 교수·학습 지도방법 교육을 목표로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과정은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이해(기초과정), 함께하는 특수교육(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과정은 각각 2주 동안 30시간, 총 60시간을 이수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표 II-2>는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내용과 시수를 제시하고 있다.

<표 II-2>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내용 및 시수

과 정	일차	영역	강 좌 명	시수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이해 (보조원기초과정)	1주	직무 및 전공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의 이해	3
			문제행동의 예방과 중재전략	3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과 역할	3
			특수교육보조원의 우수활동 사례	3
			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천원칙의 이해	3
	2주		정신지체 학생의 특성과 지원방법	3
			학습장애 학생의 특성과 지원방법	3
			시·청각장애학생의 특성과 지원방법	3
			지체부자유학생의 특성과 지원방법	3
			정서·행동장애학생의 특성과 지원방법	3
계			30	
함께하는 특수교육 (보조원심화과정)	1주	직무 및 전공	행동주제 원리의 적용	3
			특수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이해	3
			초등특수학급 둘러보기	3
			중등특수학급 둘러보기	3
			순회학급 둘러보기	3
	2주		정신지체학교 둘러보기	3
			정서장애학교 둘러보기	3
			시각장애학교 둘러보기	3
			청각장애학교 둘러보기	3
			지체부자유학교의 둘러보기	3
계			30	
총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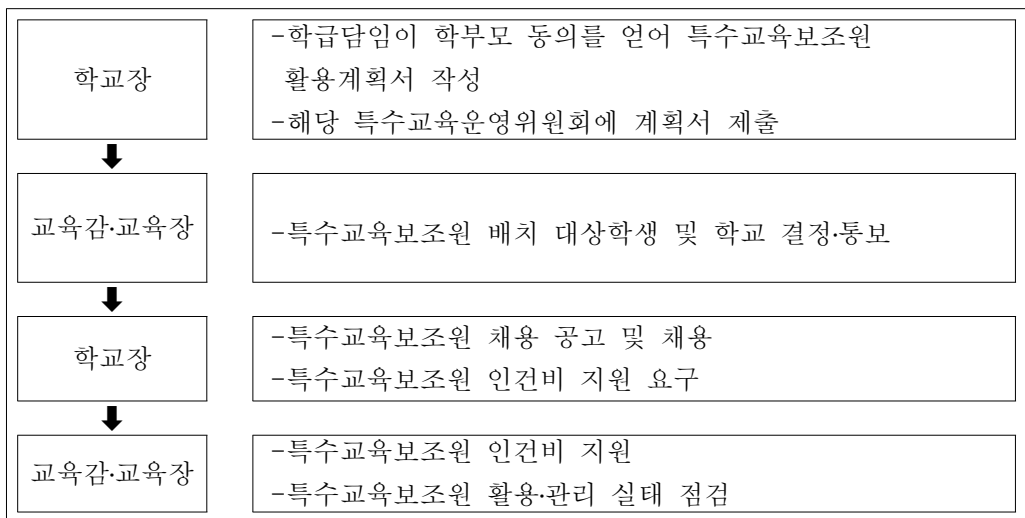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안내(2008).

국립특수교육원은 <표 II-2>와 같은 내용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특수교육보조원들을 실제 특수교육현장에 배치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강경숙 등(2002)의 제안에 의하면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는 시·도 교육청이나 시·군·구·교육청에서 하며 장애유형별, 학교과정별, 장애정도, 보조원 필요 학생 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해야하며 관리는 각급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08a)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담임교사(특수학급 설치학교의 경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담임 공동)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명의로 특수교육보조원회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한 학생에 한해 배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08a)의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그림 II-3>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선정 및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a). 200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p34.

<그림 II-3> 특수교육보조원의 선정 및 운영절차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와 같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라는 지침에 모호한 점이 많아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중도·중복 학생의 경우 장애 등급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2006)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장학사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학생 행동 평정표’에 근거하여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표를 만들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중도·중복 장애학생으로서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우선
 - ㄱ.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학생
 - ㄴ. 과잉행동장애로 인하여 교실 및 학교를 이탈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학생
 - ㄷ. 위생처리가 불가능한 학생(대소변처리 및 생리처리)
 - ㄹ. 스스로 식사 및 착 탈의가 불가능한 학생

- ② 상위 장애등급 장애 학생 다수 교
- ③ 동일 조건일 경우 저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우선하여 배정
- ④ 동일 조건일 경우 전체 특수학급 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용변, 이동, 식사, 세면)을 처리할 수 없어 지속적인 보조가 요구되는 장애 학생
- ② 정서장애로 인해 문제행동 및 과잉행동 등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속적인 보조가 요구되는 장애 학생
- ③ 중복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생활 및 학습에 보조가 요구되는 장애학생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03~'07)에서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

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활용을 <표 II-4>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표 II-5>와 <표 II-6>는 2007년 전국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이다. 그 중 <표 II-5>은 2007년 전국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을 그리고 <표 II-6>은 2006~2008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유급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4> 연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계획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인 원	250	1,000	2,000	3,000	4,000	10,250
소요예산	1,814	7,258	14,516	21,774	29,032	74,394

자료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3). 제2차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03~'07).

<표 II-5> 2007년 전국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영역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계		
	유급 ¹⁾	장통 ²⁾	공익 ³⁾	유급	장통	공익	유급	장통	공익	유급	장통	공익
서울	212	25	154	379	215	111	47	13	22	638	253	287
부산	174	19	11	202	81	0	22	12	0	398	112	11
대구	92	17	43	107	34	24	6	5	2	205	56	69
인천	60	10	6	240	62	69	3	1	0	303	73	75
광주	19	6	31	70	43	63	2	1	2	91	50	96
대전	56	8	15	114	52	75	1	1	0	171	61	90
울산	29	0	22	88	0	56	13	0	20	130	0	98
경기	70	28	45	496	188	226	34	6	20	600	222	291
강원	17	6	113	119	31	3	14	14	34	150	51	150
충북	96	4	74	96	33	22	7	8	1	199	45	97
충남	39	4	14	153	20	36	12	7	8	204	31	58
전북	65	0	0	113	22	1	51	16	3	229	38	4
전남	25	2	21	124	24	63	22	5	8	171	31	92
경북	48	0	22	146	31	25	38	14	0	232	45	47
경남	97	2	23	253	52	46	50	17	6	400	71	75
제주	43	4	24	34	2	4	38	4	2	115	10	30
계	1,142	135	618	2,734	890	824	360	124	128	4,236	1,149	1,570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c). 특수교육연차보고서.

¹⁾유급: 유급특수교육보조원.

²⁾장통: 장애통합보조원.

³⁾공익: 공익근무요원.

<표 II-6> 2006~2008 광주광역시 교육청 유급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2006				2007				2008			
일반 학급	특수 학급	특수 학교	계	일반 학급	특수 학급	특수 학교	계	일반 학급	특수 학급	특수 학교	계
1	50	8	59	2	69	19	90	2	70	19	91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c).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장애학생 교육의 질 제고에 있다. 즉, 특수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교수적 질을 높이고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이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도움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원의 지원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2b).

교육과학기술부(2008a)는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및 관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특수학교 설치 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담당.
- ② 특수학급 미설치 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교육과학기술부(2008a)에서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활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보조원 활용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박미경·강경숙(2004)의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도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범위를 특정 장애 학생의 용변이나 문제 행동에만 활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업시간 보조 및 전반적인 특수학급활동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이 통합학급만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특수학급에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활용 범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2002a)은 특수교육 보조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교

사나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문제 해결력 등의 기술을 적절히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조원의 일과 운영, 근무평가 방식 및 내용,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의 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업무관리 방법으로는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조원이 자신의 일일업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관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 평정 준거로는 일반적인 출·퇴근 등 근무태도, 교육활동 지원정도, 장애학생 지도 방법,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평가의 준거야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특수교육보조원 평가 및 관리 주체로 교육청, 학교장, 담당교사 등이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보조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으로는 학생의 일과(수업) 시간에만, 등·하교 지도 및 방과 후 활동까지, 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만(시간제 근무), 혹은 타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는 등 어느 정도의 근무 시간이 적합한 지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무 시간의 일부인 특수교육보조원의 주당 수업 보조 시수가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옥선(2007)은 특수교육보조원 근무지침과 담임교사의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특수교육보조원 근무지침

- ㄱ. 보조원의 출퇴근 시각은 본교 교직원에 준한다.
- ㄴ. 출근부는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일지로 대신한다.
- ㄷ. 결근, 지각, 외출, 조퇴 등은 사전에 활동 학급의 담임교사와 협의 후 업무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결재를 득한 후 시행되도록 한다.
- ㄹ. 보조원은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 ㅁ. 교사가 작성한 교육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교사의 교육방침과 지시에 따른다.
- ㅂ. 시종시간을 잘 지키고 보조원의 활동이 다른 학생들이나 수업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ㅅ. 보조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한다.

- . 근무시간 동안 교내에서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 ㄱ. 교육이나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학부모에게 사사로이 말하지 않도록 한다.
- ㄴ. 학교의 제반사항이나 학생의 신상에 대한 것 또는 교실 수업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ㄷ.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교사와 상의하여 신속히 해결하도록 한다.
- ㄹ.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잘 파악하여 지원 하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고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한다.

② 담임교사의 보조원 활용의 지침

- ㄱ. 학생들의 교육의 위하여 교사와 보조원이 협력팀으로서 서로 원활하게 상호 교류해야 한다.
- ㄴ. 보조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혹은 부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한다.
- ㄷ. 보조원이 장애아동의 활동을 보조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집단 내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 ㄹ.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 교재를 수정 혹은 제작하는데 보조원을 활용한다.
- ㅁ. 보조원이 학급에서 장애아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조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연수를 실시한다.
- ㅂ. 담임교사는 보조원의 활동을 관찰하여 보조원의 활동보조가 학생과 교사 자신, 학생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하지 않는지 항상 염두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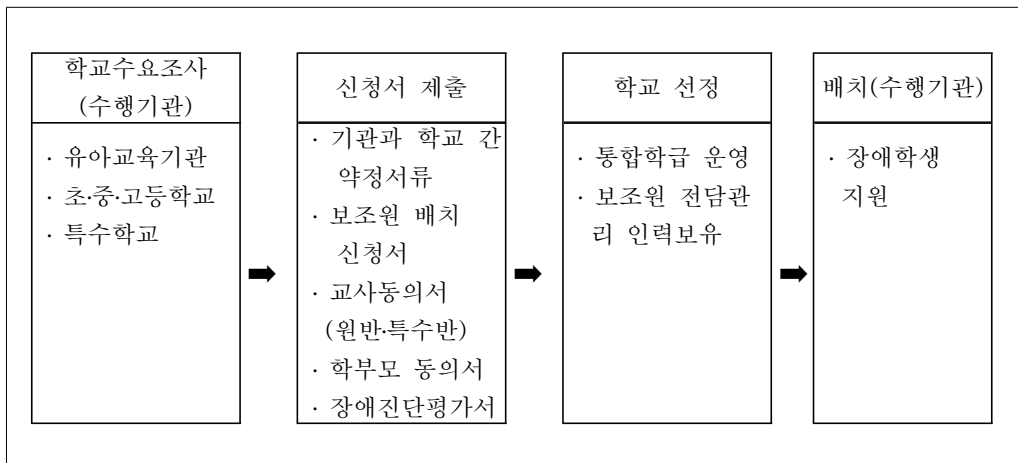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기본적인 근무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보조원의 기본적 자세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항상 학생들과 학습에 대한 보조의무를 다한다.
- ② 교사와 함께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교사의 지시를 받는다.
- ③ 자신이 생각하는 교수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교사와 의논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과정, 학습결과에 대해 교사에게 피드백을 한다. 즉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학부모 혹은 관리자가 아니라 담당교사와 의견을 나눈다.

- ④ 아동의 교육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판단하고 의심이 생기면 질문한다.
- ⑤ 장애를 지닌 학생들과 공부할 때 학생이 전전으로 성인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조원은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존을 최소화해 발전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장애통합보조원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실업·빈곤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자활후견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장애통합보조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림 II-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통합보조원이 선정되어진다.



<그림 II-7>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선정절차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통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인력으로 소정의 보조원을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장애학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살펴보면 <표 II-8>와 같다.

<표 II-8> 장애통합보조원의 역할

구분	지원내용	세부지원 사항
교수-학습 활동지원	학급활동 지원	· 원반 및 특수반 수업 지원 · 착석지도 · 개별학습지원 · 문제행동 중재 및 행동수정지원
	현장학습 지원	· 원격학급 및 특수학급 현장학습지원
	예체능 지원	· 체육 및 미술 등의 활동 지원
학교생활 지도지원	기본생활	· 장애학생 기본생활(신변처리 등) 습관형성 지도지원 · 또래와의 관계형성지원/생활예절지도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지원
	위생지도	· 장애학생 급식 보조 (급식규칙-식판지도, 편식지도) · 바람직한 식생활 지도, 급식지원 식사예절
	안전지도	· 안전사고 예방지도 · 장애학생의 발작적·기습적 폭력행동지도

출처: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2007. 1.16). 장애통합보조원 연수 자료집.

(사)한국자활후견기관에서 파견하는 장애통합보조원은 지속적인 직업재교육과 사회·문화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적절한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활기관의 주관 하에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특수아동의 이해, 정서·행동 학습장애, IEP에 대한 개괄 이해,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인식, 특수아동의 진단·평가의 종류 및 경과 해석에 대해 이해, 학력 전 과정에서 교수영역별 지도 및 보조원 역할, 초등과정에서 교과별 학습지도 및 보조원의 역할, 중등과정에서 학습지도 및 보조원의 역할,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사회성 촉진 방안, 체육수업 및 특수체육에서의 보조원의 역할, 문제행동의 이행, 장애학생의 생활습관 지도 및 학교생활지원에서의 보조원의 역할, 음악수업 및 음악치료에서의 보조원의 역할,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지원, 현장체험, 미술수업 및 미술치료에서의 보조원의 역할, 자기

갈등 관리, 종이접기, 컴퓨터 교육, 사례 I·II, 현장실습의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장애통합보조원의 연수시간은 <표 II-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9> 장애통합보조원 교육 연수

과정	대상	내용	시간
초급	신규	특수교육이론	40
		직업능력향상/ 특기적성	20
		실습	30
중급	1학기 이상 경력자	특수교육이론	40
		직업능력향상 특기적성	20
고급	1년 이상 경력자	특수교육이론	20
		직업능력향상 특기적성	30
계			200

출처: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2007. 1.16). 장애통합보조원 연수 자료집.

이러한 교육을 받고 (사)한국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배치되는 장애통합보조원은 광주서구자활후견기관, 광주북구희망자활후견기관, 광주북구일터자활후견기관이며 학부모의 요구나 학교장의 교구에 의해 파견 배치된 장애통합보조원은 <표 II-10>과 같다

<표 II-10> 광주광역시 장애통합보조원 특수학교(급) 배치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32	5	2	4	43

출처: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자료제공 (2008. 5. 20).

3) 공익근무요원

199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 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의 특수교육 분야 활용방안과 관련해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병무청은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특수교육 현장에 장애학생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익근무요원 제도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의 효과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도 장애학생들의 취학이 늘어나고 장애가 심한 학생이 늘어날수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 한 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원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2b).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요구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보조원을 2005년 2,000명, 2006년 3,000명, 2007년 4,000명으로 증진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예산확보를 두고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신분은 비정규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는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맹점을 갖고 있다(안재석, 2007).

특수교육보조원 투입과 관련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특수교육보조원의 처우문제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인력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특수교육 분야 활용방안과 관련해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병무청은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력이 모자라다는 데 공감하고, 2006년부터 특수교육 현장에 장애학생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재석, 2007).

우리나라 헌법 39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하여 국민개병주의 원칙하에 부분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병역자원이 정규병력 수준을 초과하므로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분 징집제를 운영하며 잔여인력은 대체병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체 병역도 넓은 의미의 국방의무에 포함하여 70년째 이후 특례보충역(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공중보건의, 농어민후계자 제도 등이 시행되어 왔으며, ‘69년 이후 시행되던 방위소집 제도에서 방위병의 복무기간(18개월)이 현역병의 복무기간(26개월)보다 짧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정명근, 2004).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는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병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확보가 곤란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지원업무분야와 국제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지원 분야 또는 문화 창달 및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의 육성분야 근무를 병역대체복무의 한 형태로 신설한 것이다(병무청, 2006).

이렇게 신설된 공익근무요원제도는 병역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전면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병무청(2006)은 최근 공익근무요원의 일반 행정 보조 분야 지원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봉사생활지도 분야에는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의 ‘2006 공익근무요원배정계획’을 내놓았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특수교육 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장애학

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장애학생과 2년이 넘는 기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장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져 사회적 통합교육의 확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안재석, 2007).

1)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병무청 훈령 74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제3조(관리자원)에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징병검사결과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②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③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선발되거나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④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 수의, 법무, 군중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6.11.22>
- ⑤ 공중보건의사·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6.11.22>
- ⑥ '74.12.31이전 출생자로서 종전 법(법률 제4506호)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독자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5.2.28>
- ⑦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⑧ 제2국민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출원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3.1.8>
- ⑨ 종전 법(법률 제4685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방위소집 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5.2.28>
- ⑩ 기타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출원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3.1.8>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 이후 특수교육기관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제도와 요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 자원 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병무청 훈령 745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하며, 소집할 수 있다.

- 제 15조의 2(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①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을 소집단위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2.2, 2006.11.22>.
- 제 16조의 3(특정복무분야 배정인원 선발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생활지도 분야(사회복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및 장애학생 지원분야(초·중·고등학교)의 배정인원 전원에 대하여 본인선택 할 수 있도록 공석을 배정하고 본인선택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서는 소집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이 경우 제 12조 제 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본인 선택 및 선발을 제한한다.
- 제 1항의 소집순서에 따라 선발할 때는 고졸 이상 학력자가 선발되도록 하되 본인선택은 학력에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 제 16조(특정 자격· 전공자 등 소집단위) 다음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해서는 복무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 면허· 전공자 등을 당해 소집 월의 통지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2.3.20, 2003.12.10, 2005.12.2, 2006.11.22>. 다음 <표 II-1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1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구 분	대 상	임무(복무 분야)	복무기간
행정관서 요원	보충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26 개월
국제협력 봉사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외교통상 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개발도상국가에 파견, 한국어 교육 및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 지원분야 근무	30 개월
예술·체육 요원	현역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해당 특기 분야 근무	34 개월

출처: 병무청(2006). 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

2)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공익근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또는 복무 형태는 <표 II-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12>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기능별	복무분야	임 무	복무 형태
경 비	시설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시설·설비 경비 및 방호 • 방문자등 안내·계도 	주간 또는 주·야간
	운 전	• 관용차량 공무 시 운전	주 간
감 시	재난안전감시	• 재난(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화재 등) 위험지역 감시 및 순찰	주간 또는 주·야간
	위생 감시	• 불량식품 감시·검사보조 및 시료수거·채취 등	주 간
	운 전	• 관용차량 공무 시 운전	주 간

<표 II-12> 계속됨

기능별	복부분야	임 무	복무 형태
보호	차량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 순찰 자동차 매연단속 및 계도 	주간 또는 주·야간
	질서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질서 유지 및 안내 보조 거리질서(노점상, 노상적치물, 광고물 등) 감시 및 순찰 소음(생활, 이동 소음)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지도 	주간 또는 주·야간
	운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용차량 공무 시 운전 	주 간
봉 사	수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입소 또는 재가 독거노인 활동 보조 시설입소 또는 재가 독거장애인 목욕, 음식섭취 등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장애학생 아동지원 (초·중·고/보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지원 등 학습보조 승·하차 등 활동 및 음식섭취 등 지원 	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및 여가생활 등 보조 물품전달, 장애인행정서비스 등 지원 	주간
	청소년 구조/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등 지원 상담요원 보조 	주간 또는 주·야간
	사회복지업무 보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노인 등 불우계층 물품전달 등 지원 복지업무 담당직원 보조 	주간
	경비·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방호 및 방문인 안내 시설물 안전관리 등 운영보조 	주간 또는 주·야간
	운전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이동, 물품전달 등 차량운전 	주간
	환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 약품관리 등 업무보조 환자이동 등 활동지원 119응급구조 업무 보조 	주간 또는 주·야간
	보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소독업무 등 보조 주민건강사업 등 운영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문화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능 등 문화재 보호 	주간 또는 주·야간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 	주간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지하철 및 해양보호지역 등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주택 등 안전 점검 	주간 또는 주·야간
	산불/녹지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예방, 진화 및 산지정화 녹지 정화활동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하천/해양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해양 오염방지 취·정수장, 상수원 등 감시·관리업무 보조 	주간 또는 주·야간	

<표 II-12> 계속됨

기능별	복무분야	임 무	복무 형태
행정 지원	병무행정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행정업무 보조 • 징병검사장 임상병리 등 보조 	주간
	일반행정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안내·상담 • 일반 행정·전산 등 업무보조 • 민방공 및 소방시설관리, 점검 및 업무보조 	주간
	우편업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송, 도착 및 배달우편물 분류 	주간 또는 주·야간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차량 공무시 운전 	주간
예술 체육	예술·체육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청장이 지정한 분야 종사 	
국제 협력	국제협력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봉사활동 	외교통상부장관 지정

출처: 병무청(2006), 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

교육인적자원부와 병무청이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2006년부터 특수교육 현장에 장애학생 지원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한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분야는 장애학생·아동지원(초·중·고/보육원)이며 그 역할로 수업지원 등 학습보조, 승·하차 등의 활동 및 음식섭취 등 지원이다. 즉,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애 학생의 학습지도 보조와 안전생활 및 통학지원 등 활동 보조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장애학생의 개인욕구, 교수-학습활동, 문제행동관리 등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3)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봉사분야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경우 봉사분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실제 배치현장에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장애학생 지원 분야의 경우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교육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전교육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배치하기 전

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선학교에서는 업무의 성격에 맞게 학교별로 장애이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안재석, 2007).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은 병무청 훈령 739호 제12조(교육) 제 1항 8호에서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소속기관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기타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복무기관장은 소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자체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교육시설이 없는 복무기관의 장은 일정한 교육공간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운영비에서 장애이해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여 특수교육보조원과 마찬가지로 국립 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연수인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를 공익근무요원들도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연수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안재석, 2007). 광주지역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은 2007년 이전까진 기초 군사훈련을 4주 동안 실시하고 복무기관 배치 후 복무 만료 시 까지 별도 전문교육이 없어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제 배치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나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한 사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기초 군사훈련 4주와 소양교육 1주, 직무교육 1주가 신설되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장애 학생들의 특성과 장애 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병무청, 2008b).

또한 시·군·구에서는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지휘 감독할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관리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가 읍·면·동 소재지의 학교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교육청 공익근무요원의 총괄담당직원 외에 실제 통제 가능한 근무지 각 급 학교에 공

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분임담당직원을 임명, 실질적인 복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안재선, 2007).

4)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현장에 장애학생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은 최근 공익근무요원의 일발 행정 보조분야 지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봉사생활지도 분야에는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의 '2006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을 내놓았으며, 학교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주요 배정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장애학생보조 등 봉사분야에 대한 요청인원은 전원 배정하기로 계획하였다.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병무청 훈령 739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행정관서 요원 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규칙 제32호 서식)에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소요인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4.7, 2001.3.28, 2002.12.30>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
 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
 3. 복무분야 및 임무
 4. 공익근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 제5조(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을 위한 조사) <개정 2001.3.28>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1.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2. 공익상 배정 필요성 <개정 2004.1.3>
 3. 근무지 위치·거리 및 교통편
 4. 복무관리 체계 및 근무시설 여건 <개정 2004.1.3, 2007.12.7>

5. <삭제 2004.1.3>

6. 전년도 고충처리실적, 복무관리 실태 <개정 2004.1.3>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에는 전년도 고충처리실적,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4.1.3>

· 제5조의2(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순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을 위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하되, 기관·단체·시설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기타 순

2. 국가기관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건재 순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건재 순

4. 공공단체 : 소속(감독) 중앙행정기관별 건재 순

② 복무분야별 배정순위는 봉사, 보호, 감시, 행정지원, 경비 순으로 한다.

<개정 2007.12.7>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되, 기관별 분야별 배정비율은 공익상 필요성 및 기관의 특성,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달리 배정할 수 있다.

즉,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복무기관장은 매년4월 30일까지 공익근무요원 배정신청서와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고, 배정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 복무기관별로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복무기관별 소집통지는 본인들의 자격이나 전공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개인별로 입영통지서를 송부하며 복무분야 및 소집순위는 <표 II-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13> 복무분야 및 소집순위

복무기관	복무분야	소집순위
시·도 교육청	학습지원	·1순위 : 교대·사대재학 및 졸업자, 교사자격 취득자. ·2순위 : 예·체능 전공자, 영어·수학 등 대학 전공자

출처:병무청 훈령 제 745호,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다음은 2008년 광주광역시에 장애학생보조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이다. <표 II-14>는 2006~2008년 광주광역시 장애학생보조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이며, <표 II-15>는 2008년 광주광역시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14> 2006~2008 광주광역시 장애학생보조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2006	2007	2008
40	90	86

출처: 광주·전남병무청(2008a),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정보.

<표 II-15> 광주광역시 공익근무요원 특수학교(급) 배치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43	7	8	28	86

출처: 광주·전남병무청(2008a),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정보.

5)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훈령 739호 제15조(복무분야 별 임무)에서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 분야의 업무는 학습지도 보조와 안전생활 및 통학지원 등 활동 보조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장애학생의 개인육구, 교수-학습활동, 문제행동관리 등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공익근무요원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통합교육을 위한 것이다. 즉, 장애학생 교육의 질 제고에 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특수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육구에 부응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교수적 질을 높이고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의 실행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에는 분야별 임무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활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안재석(2007)은 실제 특수교육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복무기관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수학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실에 배치되어 수목관리, 청소, 인쇄, 학생이탈 방지, 교무실 행정정보조 등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을 수행

둘째,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배치되어 행정정보조나 교무보조업무를 주로 하면서 학교의 요구에 따라 시간제로(등,학교시간, 현장학습 등) 학급에 배치되어 활동보조

셋째, 전적으로 학급에 배치되어 학습지도 보조, 식사지도 보조, 학생이동시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 기본적으로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업무는 학습지도 보조와 안전생활 및 통학지원 등 활동보조의 업무이나, 실제로는 학교마다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운영형태가 다르며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범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의 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병무청 훈령 739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관리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3조(지휘감독) ①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하며, 법 제31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복무기관장이 행하되,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다.
 - ② 복무기관장은 법 제31조의2 및 영 제64조의2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를 전담 처리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의2(공익대표자의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하여 공익대표자(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의 과반수 이상이 추천한 자를 말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 제16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8.4.7>
 - 제36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규칙 제 46호 서식)를 비치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44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서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 훈령 739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관리 규정을 근거로 공익근무요원의 지휘·

감독 권한 및 책임은 지역교육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있으며,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역교육청에 공익근무요원을 지휘 감독할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관리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 업무 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교육청(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복무관리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며, 지역교육청(교육과)에서는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각 급 학교에서는 복무관리 및 복무실태,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지급은 군인봉급의 월 보수와 실비의 교통비, 중식비로 되어 있으며, 봉급과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식대는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애로사항 파악하고 근무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공익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4. 관련 선행연구 고찰

국내 특수교육보조원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연도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인진과 박승희(2001)는 ‘보조교사의 역할 규명과 순기능 및 역기능에 관한 고찰 연구’에서 이미 보조교사제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통합교육 활성화와 교사의 교수 수행능력의 최대화를 가져 왔다는 미국의 특수교육 실제에서 규명된 보조교사들의 역할들과 보조교사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보조교사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교수적 수행 능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는 보조교사제 도입에 보조교사의 적합한 역할 규명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보조원제 요구분석 및 운영 방안 연구’에서 문헌연구와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실태 및 그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관련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원 및 역할, 선발, 및 교육과 배치, 복무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 방안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시하였

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급보조원은 다소의 자격제한을 둔다. 그리고 보조원의 역할은 정규교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조한다. 둘째, 유급보조원의 선발·교육·배치는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의 복무는 해당학교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복무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한다. 넷째, 특수교육보조원의 행·재정적 지원은 관련 기관의 규정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기획예산처 연도별 정부노임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의 공조체제 마련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희(2003)는 ‘통합학급 보조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소수의 통합학급에서 통합학급교사와 장애아동의 변인에 따라 보조교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주임교사일수록 사무행정적인 부분에서 보조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생의 장애 정도와 문제행동이 심할수록 신변처리 등의 자조 영역에서 보조교사의 역할 수행이 높으며, 보조교사는 학급상황에서 사회성과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의 역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영숙(2003)은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학급의 교사와 아동의 인식 연구’에서 초등학교 내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학급 교사의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과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데 대해 더 수용적이었으며 교사가 장애아동에게 주어야 하는 별도의 관심이나 주의를 보조교사가 해 줌으로 수업진행이나 전체적인 아동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고학년 보다는 저학년이,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학급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장애아동에 대해 수용적이라고 밝혔다.

강경숙과 김용욱(2004)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실태 및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설문을 조사하여 20-30대층의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 집단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초등 저학년의 통합 환경에 배

치되어 장애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을 밝혔다. 특수교육보조원이 구비해야 할 자질에 대해서는 교사, 행정가, 부모가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 신변처리와 같은 지원을 요구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박미경과 강경숙(2004)은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및 국내외 문헌들을 종합하여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방안 7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법제화 및 다양성 인식; 둘째, 특수교사의 역량강화 및 특수교육보조원 관리에 대한 훈련제공; 셋째, 관련인사들과의 역할 부담 및 연구실시; 넷째,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 다섯째, 특수교육 보조원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 보급; 여섯째, 특수교육 보조원의 연수 및 훈련강화; 일곱째,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홍보확대. 이외,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경옥(2005)은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의 학습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에 따라 전개되는 수업 현상들을 분석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의 학습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밝혔다. 그 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에게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형성하고 장애아동의 적응 행동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사회·정서적 학교생활적응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이인순(2005)은 ‘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통합교사, 특수교육보조원 각각 5명과의 심층면담과 연구자의 참여관찰로 운영의 실제와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의 실제는 현장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사전 인식이 정착되지 못한 토대 위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의 문제점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 기준의 모호성과 협력관계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후속 연구로는 특

수교육보조원이 투입된 다양한 학교급과 교육배치환경, 교육당사자제 따른 좀 더 심층적인 적응과정 및 내면적 갈등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변성희(2006)는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고, 그 결과, 보조원제 운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해 특수학급 교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특수교육 보조원들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역할에 있어서도 특수학급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수지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을 소유한 자 중에서 학교의 필요나 요구에 맞게 임용하고 그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명수(2006)는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한 통합학급교사, 특수학급교사,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 비교 조사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과 관련해서 특수학급교사는 학업지도에 통합학급교사는 문제행동 관리에 특수교육보조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담당 학생의 장애정도, 교직경력, 연수경험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연수를 이수한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어려운 여건으로 지적하고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와 장애 학생의 대한 최상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자질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운숙과 김수연(2007)은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교수적 지원의 효과’에서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협력하여 일반학급에 통합되어있는 3명의 장애아동의 수업참여행동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교수적 지원 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수적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수업참여행동은 증가하고, 문제행동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과제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수교육보

조원 제도가 장애아동의 일반학급 수업참여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이 장애아동에게 실제적인 교수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김현정(2008)은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비교-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연구’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초, 중, 고등학교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및 역할, 교육 및 배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앞으로 확대 실시될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및 역할에 있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특수교육보조원 학력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아동교육관련·사회복지관련 전공자가 적절한 인력이라고 인식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에서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보조교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보조원 교육 및 배치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하고 고용형태는 특수교사는 계약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정규직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비교 결과 업무관리는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지시 하여 보조원이 기록하며, 인사관리에 있어서 특수교사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급)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및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평가는 특수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 하에 수행하므로 특수교사가 평가해야 하며 배치장소로 두 집단 모두 특수학급 교실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발표 년도 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16> 관련 선행연구 목록

번호	연구자 (연 도)	학교급별	연구대상	요 약
1	전인진·박승희 (2001)	· 일반학교	· 보조교사	미국 특수교육의 실제 사례에서 규명된 보조교사의 역할들의 목록들과 그 역할들의 순기능적 및 역기능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역기능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보조교사제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강경숙·강영택 김성애·정동일 (2002)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 행정가 (교육청 장학사, 교장, 교감) · 장애학생 학부모 · 특수교육보조원 (유급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실태 및 그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관련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원 및 역할, 선발, 및 교육과 배치, 복무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 방안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시하였다.
3	김영희 (2003)	· 초등학교	· 교사(일반학교) · 장애아동 · 보조교사	소수의 통합학급에서 통합학급교사와 장애아동의 변인에 따라 보조교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조교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역할 수행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밝혔다.
4	정영숙 (2003)	· 초등학교	· 교사(일반학교) · 일반아동	초등학교 내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교육 활동에 교사의 인식과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알아봄으로써 보조교사 지원의 통합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 II-16> 계속됨

번호	연구자 (연도)	학교급별	연구대상	요 약
5	강경숙 · 김용욱 (2004)	·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 특수학교	· 일반교사 · 특수교사 · 특수교육보조원	20-30대층의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 집단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초등 저학년의 통합 환경에 배치되어 장애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을 밝혔다.
6	박미경 · 강경숙 (2004)	·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 특수학교	· 일반교사 · 특수교사 · 특수교육보조원 · 각 중 연구자료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및 국내의 문헌들을 종합하여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방안 7가지를 제시하였다.
7	이경옥 (2005)	· 초등학교	· 특수교육보조원 의 지원을 받는 장애아동 · 특수교육보조원 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에 따라 전개되는 수업 현상들을 분석하여 특수 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 교육이 장애아동의 학습태도와 사회·정서적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유용하게 적용 가능한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8	이인순 (2005)	· 초등학교	· 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통합교사, 특수교육보조원 각각 5명과의 심층면담과 연구자의 참여관찰로 운영의 실제와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II-16> 계속됨

번호	연구자 (연도)	학교급별	연구대상	요 약
9	변성희 (2006)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사(특수교사) · 특수교육보조원 (유급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 그 결과, 보조원제 운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0	장명수 (2006)	· 초등학교	· 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통합학급교사, 특수학급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수업협의를 통해 질 높은 통합교육의 성과와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감소와 일상생활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족한 성과를 밝혔다.
11	이윤숙·김수연 (2007)	· 초등학교	· 교사(일반교사) · 특수교육보조원 (유급특수교육보조원) · 장애아동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협력하여 일반학급에 통합되어있는 3명의 장애아동의 수업참여행동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수업 참여행동 발생율, 문제행동 발생율, 과제성취도 평가를 통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교수적 지원 효과를 도출하였다.
12	김현정 (2008)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교사(특수교사) · 특수교육보조원 (유급특수교육보조원)	광주광역시 소재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초, 중, 고등학교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및 역할, 교육 및 배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앞으로 확대 실시될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과 특수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의 체계적이고 질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비교를 위해 2008년 5월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62개교 108학급의 특수교사와 62개교 86명의 공익근무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특수교사에게 78부의 설문지가 회수(회수율 72.2%)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에게 75부의 설문지가 회수(회수율 87.2%)되었다. <표 III-1>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급)의 현황이다.

<표 III-1> 광주광역시 공익근무요원 특수학교(급) 배치현황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n)	43	7	7	5	62
특수교사(n)	53	10	10	35	108
공익근무요원(n)	43	7	8	28	86

출처: 광주·전남병무청(2008a).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정보.

한편, 연구대상의 기초사항을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으로 나누어 보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특수교사의 경우 여자가 62(79.5%), 남자가 16(20.5%), 공익근무요원은 특성상 전체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사항으로 성별은 구분을 하지 않았다. 연령은 특수교사의 경우 25~29세(32.1%), 30~34세(21.8%), 35~39세(25.6%)로 25~39세의 연령대에 총 79.5%로 분포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20~24세(72.0%), 25~29세(26.7%)로 20~29세의 연령대에 총 98.7%로 분포하고 있었다. 소지자격은 특수교사 49명(62.8%)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64명(85.3%)이 자격증이 없었으며 기타 11명(14.7%)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특수교육경력은 특수교사는 1년 이상~2년 미만이 13명(16.7%)이며, 공익근무요원은 1년 이상 2년 미만 57명(73.0%)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급별 특수교사는 초등학교 37명(47.5%), 공익근무요원은 초등학교 39명(52.0%)이 배치되었다. 특수교사의 학급유형은 특수학급이 53명(67.9%), 공익근무요원의 학급유형은 특수학급이 48명(64.0%)이었다.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과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 29명(37.2%)이 가장 많았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장애경험 유·무는 ‘없다’가 38명(50.7%)이었다. 장애정도 학생 수는 특수교사는 중등도 47(60.2%), 공익근무요원은 40명(53.3%)로 특수학교(급)에 중등도의 장애정도가 많았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김현정(2008)이 사용한 설문지를 근거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문항의 수정·보완 절차는 광주지역 특수교사 2명, 공익근무요원 2명에게 직접 전달 작성하여 1차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는 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기초사항(성별, 연령, 소지자격, 교육경력, 학교 급별 등),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및 역할,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의 구성 내용은 <표 III-3>와 같다.

<표 III-2> 연구대상자의 기초사항(N=153)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구분	내용	빈도	%	계(%)	구분	내용	빈도	%	계(%)
성별	남	16	20.5	78 (100.0)	성별	•	•	•	•
	여	62	79.5			•	•	•	
연령	•	•	•	78 (100.0)	연령	20세미만	0	0.0	75 (100.0)
	20~24세	4	5.1			20~24세	54	72.0	
	25~29세	25	32.1			25~29세	20	26.7	
	30~34세	17	21.8			30~34세	1	1.3	
	35~39세	20	25.6			•	•	•	
	40~44세	6	7.7			•	•	•	
	45~49세	1	1.3			•	•	•	
	50~54세	1	1.3			•	•	•	
	55~59세	3	3.8			•	•	•	
60세이상	1	1.3	•	•	•				
소지 자격	•	•	•	78 (100.0)	소지 자격	없음	64	85.3	75 (100.0)
	일반교사	1	1.3			치료교사	0	0.0	
	특수교사	49	62.8			보육교사	0	0.0	
	특수교사 + 일반교사	28	35.9			사회복지사	0	0.0	
	•	•	•			기타	11	14.7	
특수 교육 경력	1년 미만	4	5.1	78 (100.0)	근무 경력	•	•	•	75 (100.0)
	1년이상~2년미만	13	16.7			•	•	•	
	2년이상~3년미만	8	10.3			6개월미만	6	8.0	
	3년이상~4년미만	3	3.8			6개월이상~1년미만	7	9.3	
	4년이상~5년미만	10	12.8			1년이상~2년미만	57	76.0	
	5년이상~6년미만	7	9.0			2년이상~3년미만	5	6.7	
	6년이상~7년미만	6	7.7			3년이상~4년미만	0	0.0	
	7년이상~8년미만	4	5.1			4년이상~5년미만	0	0.0	
	8년이상~9년미만	3	3.8			•	•	•	
	9년이상~10년미만	11	14.1			•	•	•	
10년이상	9	11.6	•	•	•				
학교 급별	초등학교(초등부)	37	47.5	78 (100.0)	학교 급별	초등학교(초등부)	39	52.0	75 (100.0)
	중학교(중등부)	20	25.6			중학교(중등부)	20	26.7	
	고등학교(고등부)	21	26.9			고등학교(고등부)	16	21.3	
학급 유형	일반학급	0	0.0	78 (100.0)	학급 유형	일반학급	1	1.3	75 (100.0)
	특수학급	53	67.9			특수학급	48	64.0	
	특수학교학급	25	32.1			특수학교학급	26	34.7	
공익 요원 과 근무 한 기간	6개월미만	21	26.8	78 (100.0)	장애 경험 유· 무	•	•	•	75 (100.0)
	6개월이상~1년미만	17	21.8			•	•	•	
	1년이상~2년미만	29	37.2			유	37	49.3	
	2년이상~3년미만	8	10.3			무	38	50.7	
	3년이상~4년미만	1	1.3			•	•	•	
	4년이상~5년미만	2	2.6			•	•	•	
아동 의 장애 정도	경도	24	30.8	78 (100.0)	아동 의 장애 정도	경도	25	33.4	75 (100.0)
	중등도	47	60.2			중등도	40	53.3	
	중도	7	9.0			중도	10	13.3	

<표 III-3>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영역 구분	질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특수교사	공익근무 요원	특수교사	공익근무 요원
기초사항	성별*, 연령, 소지자격증, 특수교육경력, 학교 급별, 학급유형, 공익요원과 근무한 기간, 장애경험 유·무, 장애정도	1-8	1-7	8	7
공익근무요원 자격 및 역할	보조원의 학력, 적절한 사람, 보조원명칭, 보조원 자질, 장애아동 지원역할, 열할 한계의 갈등, 근무 시 어려운 점 상담, 역할수행 지시	1-9	1-9	9	9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배치	보조원 양성교육방법, 연수내용, 임기, 직부연수시간, 배치·운영의 장점	10-16	10-16	8	8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보조원의 근무시간, 업무관리, 인사관리, 보조원제 효과, 학생안전관리, 책임여부, 평가, 배치장소, 근무자세, 지원영역별 지원계획 수립 횟수	17-25	17-25	9	9
계		34	33	34	33

* 공익근무요원 기초사항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음.

4.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자는 완성된 1차 설문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광주지역 특수학교 교사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잘 이해되는 않은 문항을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첨가하여 2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2차 설문지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기초사항 특수교사 8문항과 공익근무요원 7문항, 공익근무요원의 자격과 역할 9문항,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배치 8문항,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9문항, 총 특

수교사 34문항과 공익근무요원 33문항을 작성하였다. 질문에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나타났다.

2) 본 조사

본 조사의 실시기간은 2007년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였다. 질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6월 2일 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6월 2일 까지 응답한 교사는 107명이었다. 5월 26일 2차 추후편지를 보내 회신 요청한 결과 6월 19일까지 추가로 38명이 회신하였으며 8명은 전화로 회신을 요청하여 추가로 응답하였다. 2008년 6월 19일까지 광주광역시 지역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회수율은 총 194명중 153명으로부터 질문지가 회수되어 78.9%였다.

5.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은 기술통계(빈도와 백분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복응답한 문항의 경우에는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순위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및 역할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에게 공익근무요원의 학력, 공익근무요원 역할에 가장 적절한 사람, 특수교육보조원 명칭, 자질, 장애아동 지원역할, 역할 한계의 갈등, 근무 시 어려운 점 상담대상, 역할수행 지시방법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1) 공익근무요원의 학력

공익근무요원의 학력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학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특수교사 37.2%가 대학졸업으로 가장 많은 답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40.0% 고등학교 졸업으로 가장 많이 답하였다. 2순위에 특수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공익근무요원은 대학졸업과 기타에 응답하여 공익근무요원보다 특수교사가 학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공익근무요원의 적절한 학력(N=153)

항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고등학교 졸업	12	15.4	30	40.0
전문대학 졸업	22	28.2	9	12.0
대학 졸업	29	37.2	18	24.0
기타	15	19.2	18	24.0
계	78	100.0	75	100.0

2)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사람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묻는 설문 결과 <표 IV-2>와 같다.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아동교육관련 전공(경험)자에 44.9%, 사회복지관련 전공(경험)자에 23.1%,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관련 전공(경험)자에 46.7%, 아동교육관련 전공(경험)자에 18.6%가 응답하였으며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치료관련 전문가, 관계없이 임용에 합격한 사람, 장애아동 부모로 응답하였고 기타 응답에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은 특수교육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과 장애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였다.

<표 IV-2>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가장 적절한 사람(N=153)

항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아동교육관련 전공(경험)자	35	44.9	14	18.6
장애아동 부모	0	0.0	3	4.0
사회복지관련 전공(경험)자	18	23.1	35	46.7
관계없이 임용절차에 합격된 사람	9	11.5	5	6.7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등 치료관련 전문가	9	11.5	11	14.7
기타	7	9.0	7	9.3
계	78	100.0	75	100.0

3)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적절성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설문 결과 <표 IV-3>과 같다.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의 91.0%는 '예'라고 응답하였고 '아니오'에 9%가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89.3%는 '예', '아니오'에 10.7%가 응답하여 두집단간의 명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적절성(N=153)

항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예	71	91.0	67	89.3
아니오	7	9.0	8	10.7
계	78	100.0	75	100.0

4)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적절한 이유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이 적절한 이유를 묻는 설문지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의 59.2%와 공익근무요원의 52.2%가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의 과학, 전산, 실험보조원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IV-4>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적절한 이유(N=138*)

항목	특수교사(n=71)		공익근무요원(n=67)	
	빈도	%	빈도	%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42	59.2	35	52.2
공익근무요원이 정기적으로 신분 전환을 요구하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2	2.8	1	1.5
기존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학,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27	38.0	28	41.8
기타	0	0.0	3	4.5
계	71	100.0	67	100.0

*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

5) 공익근무요원의 자질

특수교육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우선순위로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표 IV-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위와 2순위는 같았고 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사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에 61.6%, 공익근무요원은 53.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 특수교사는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37.2%, 공익근무요원은 30.7%, 3순위에 특수교사는 인간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25.6%로 대답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기본적인 학습(읽기, 쓰기, 셈하기)지도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에 22.7%가 응답하여 3순위에

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자질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공익근무요원의 자질(N=153)

항 목	특수 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장애 원인, 개념 및 분류에 대한 이해	10	12.8	12	15.4	2	2.6	13	17.3	16	21.3	11	14.7
건강 및 의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0	0.0	2	2.6	5	6.4	0	0.0	1	1.3	1	1.3
인간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4	5.1	20	25.6	20	25.6	7	9.3	13	17.3	10	13.3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15	19.2	29	37.2	15	19.2	9	12.0	23	30.7	11	14.7
기본적인 학습(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0	0.0	4	5.1	9	11.5	1	1.3	3	4.0	17	22.7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0	0.0	1	1.3	4	5.1	0	0.0	0	0.0	3	4.0
컴퓨터 활용 능력	1	1.3	1	1.3	4	5.1	0	0.0	2	2.7	3	4.0
교육관련 법령 및 행정적 사무처리에 대한 이해	0	0.0	1	1.3	0	0.0	0	0.0	0	0.0	0	0.0
장애보상 치료활동(언어, 작업, 물리, 심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0	0.0	3	3.8	5	6.4	4	5.3	8	10.7	7	9.3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	48	61.6	3	3.8	13	16.8	40	53.5	7	9.3	12	16.0
기타	0	0.0	2	2.6	1	1.3	1	1.3	2	2.7	0	0.0
계	78	100.0	78	100.0	78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 음영부분: 각 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항목.

6) 장애아동 지원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중요 역할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중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 3가지를 순위별로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위와 3순위는 같았고 2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은 적용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에 각각 46.2%, 36.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 특수교사는 1순위에서

와 같이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에 28.2%가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문제행동관리에 26.5%가 응답하였다. 3순위로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수업보조하기에 각각 17.9%, 42.7%로 응답하였다.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을 위한 적응기술과 통합교육현장에서 수업보조하기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익근무요원은 적응기술과 장애아동 문제행동을 관리 하고 수업보조하기를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역할로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를 1순위로 인식하였다.

<표 IV-6>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중요 역할(N=153)

항 목	특수 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수업보조하기	13	16.7	14	17.9	14	17.9	12	16.0	11	14.7	32	42.7
교수활동 중에 학생의 행동을 기록하고 교사와 의사소통하기	4	5.1	7	9.0	12	15.4	7	9.3	3	4.0	2	2.7
교수-학습 활동지원, 자료 준비 및 작성	6	7.7	9	11.5	11	14.1	3	4.0	5	6.7	4	5.3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등) 관리	36	46.2	22	28.2	5	6.4	27	36.1	18	24.0	7	9.3
문제행동 관리	14	17.9	12	15.4	7	9.0	12	16.0	20	26.5	17	22.7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호작용	0	0.0	0	0.0	5	6.4	1	1.3	2	2.7	0	0.0
비장애 학생과의 관계형성 지원	4	5.1	7	9.0	4	5.1	7	9.3	11	14.7	7	9.3
교사의 행정업무 지원	0	0.0	0	0.0	7	9.0	1	1.3	2	2.7	2	2.7
보조 장비 사용(예: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 지원	1	1.3	7	9.0	12	15.4	5	6.7	3	4.0	4	5.3
기타	0	0.0	0	0.0	1	1.3	0	0.0	0	0.0	0	0.0
계	78	100.0	78	100.0	78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 음영부분: 각 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항목.

7) 공익근무요원의 역할과 관련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갈등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중 역할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와 공익근무요원 간에 갈등을 경험한 역할에 대한 두 집단의 분석결과 <표 IV-7>과 같다.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은 갈등경험 없음에 38.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동 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에 15.5%, 문제행동

관리지원에 14.6%순으로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갈등경험 없음에 75.7%, 문제행동 관리지원에 6.1%, 교수-학습활동에 4.9%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항목에 비해 갈등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수교사의 경우 38.9%,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75.7%가 갈등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V-7>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관련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갈등
(N=153)

항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갈등 경험 없음	40	38.9	62	75.7
교수-학습활동(예: 수업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14	13.6	4	4.9
교사의 사무업무 지원	3	2.9	2	2.4
이동 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교실이동, 현장학습 지원, 통학보조, 안전보호 등)	16	15.5	1	1.2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	2	1.9	2	2.4
문제행동 관리지원	15	14.6	5	6.1
적용기술(신변처리, 착 탈이, 식사지도 등) 지원	10	9.7	2	2.4
보조 장비 사용(예: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 지원	0	0.0	1	1.2
기타	3	2.9	3	3.7
계	103*	100.0	82*	100.0

*중복응답한 수.

8)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관련된 상담 대상

공익근무요원이 역할 수행을 하는 동안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누구와 주로 상담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64.1%가 타 학급 특수교사와 상담한다고 응답하였고 기타에 19.2%, 학교장이나 교감에 14.1%로 응답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기타에 42.7%가 응답하였다. 기타에 응답한 경우 담당 특수교사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타 학급 공익근무요원이 34.6%, 타 학급 특수교사 또는 학교장이나 교감과 상담한다는 응답이 10.7%였다. 특수교사는 타 학급 특수교사와 상담을 하는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담당 특수교사라는 응답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8>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관련된 상담 대상(N=153)

항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학교장이나 교감	11	14.1	8	10.7
타 학급 특수 교사	50	64.1	8	10.7
타 학급 공익 근무 요원	2	2.6	26	34.6
학부모	0	0.0	1	1.3
기타	15	19.2	32	42.7
계	78	100.0	75	100.0

9)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

공익근무요원에게 역할수행을 지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에 43.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 38.5%로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 41.4%,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에 29.3% 순으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9>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N=153)

항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	34	43.5	22	29.3
보조원이 자신의 일일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	8	10.3	18	24.0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	30	38.5	31	41.4
기타	6	7.7	4	5.3
계	78	100.0	75	100.0

2.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배치

1) 공익근무요원 양성 교육방법

공익근무요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분석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는 방법에 52.6%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 순위는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30.8%, 인력개발센터주관의 공익근무요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7.7% 응답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는 방법에 34.6%, 공익근무요원이 속해 있는 학급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 받게 함이 26.7%,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22.7%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는 방법에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

<표 IV-10> 공익근무요원 양성 교육방법(N=153)

항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24	30.8	17	22.7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	41	52.6	26	34.6
인력개발센터주관의 공익근무요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6	7.7	10	13.3
공익근무요원이 속해 있는 학급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 받게 함	4	5.1	20	26.7
기타	3	3.8	2	2.7
계	78	100.0	75	100.0

2) 공익근무요원의 연수내용

공익근무요원의 연수내용의 중요도 순위의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가 1순위로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36.0%로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으며, 2순위 23.0%, 3순위 20.5%로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 전략이 연수내용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하였고 4순위로는 24.4%가 적응기술(신변자립, 착 탈의, 식사지도), 5순위로 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천원리의 이해에 16.7%가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1순위로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30.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20.1%가 응답하였다. 3순위로는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전략에 18.7%가 응답하였으며 4, 5순위는 의사소통기술로 각각 16.0%, 17.3%가 응답하였다.

<표 IV-11> 공익근무요원의 연수 내용(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1순		2순		3순		4순		5순		1순		2순		3순		4순		5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	28	36.0	10	12.8	10	12.8	7	9.0	6	7.7	23	30.6	10	13.3	12	15.8	4	5.3	9	12.0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방법	3	3.8	5	6.4	9	11.5	10	12.8	6	7.7	2	2.7	10	13.3	8	10.7	10	13.3	5	6.7
치료교육의 이론과 실제	0	0.0	1	1.3	0	0.0	0	0.0	2	2.6	3	4.0	1	1.3	0	0.0	4	5.3	3	4.0
특수학교(급)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의 이해	3	3.8	5	6.4	2	2.6	3	3.8	2	2.6	1	1.3	3	4.0	8	10.7	2	2.7	6	8.0
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천 원칙의 이해	9	11.5	13	16.7	9	11.5	2	2.6	13	16.7	2	2.7	3	4.0	2	2.7	11	14.7	2	2.7
장애인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9	11.5	2	2.6	1	1.3	10	12.8	5	6.4	17	22.7	15	20.1	8	10.7	8	10.7	6	8.0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	8	10.3	18	23.0	16	20.5	5	6.4	6	7.7	5	6.7	13	17.3	14	18.7	11	14.7	7	9.3

* 음영부분: 각 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항목.

<표 IV-11> 계속됨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1순		2순		3순		4순		5순		1순		2순		3순		4순		5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방법(예: 인슐린 투입, 심폐소생술, 현장학습)	2	2.6	5	6.4	13	16.7	5	6.4	6	7.7	3	4.0	2	2.7	3	4.0	5	6.7	4	5.3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관리	16	20.5	13	16.7	6	7.7	19	24.4	10	12.8	10	13.3	11	14.7	11	14.7	3	4.0	11	14.7
착석 및 수업태도 지도 방법	0	0.0	6	7.7	8	10.2	9	11.5	10	12.8	2	2.7	0	0.0	5	6.7	4	5.3	6	8.0
의사소통기술	0	0.0	0	0.0	2	2.6	7	9.0	3	3.8	7	9.3	3	4.0	4	5.3	12	16.0	13	17.3
발달심리학	0	0.0	0	0.0	1	1.3	0	0.0	6	7.7	0	0.0	4	5.3	0	0.0	1	1.3	2	2.7
컴퓨터 활용 실무	0	0.0	0	0.0	1	1.3	1	1.3	3	3.8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3
계	78	100.0	78	100.0	78	100.0	78	100.0	78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 음영부분: 각 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항목.

3) 공익근무요원의 임기

공익근무요원의 적절한 임기에 대한 응답 분석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임기에 대한 응답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특수교사는 학년별(1년) 임기에 97.4%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기별(6개월) 임기에 2.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학년별(1년) 임기에 77.4%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기별(6개월)에 21.3%로 응답하였다. 특수교사의 경우 90%이상이 학년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기별(6개월)에도 21.3%가 응답하여 공익근무요원보다 특수교사가 더 장기간의 임용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2> 공익근무요원의 임기(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학년별(1년)	76	97.4	58	77.4
학기별(6개월)	2	2.6	16	21.3
분기별(3개월)	0	0.0	1	1.3
계	78	100.0	75	100.0

4)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기초과정

교육청 주관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받는 직무연수는 40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표 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60시간에 66.7%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20시간에 21.8%로 응답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60시간에 42.7%, 30시간에 33.3%였다. 특수교사들과 공익근무요원 모두 직무연수 기초과정으로 60시간이 적당한 연수시간으로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120시간에 21.8%가 응답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30시간에 33.3%가 응답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수교사가 공익근무요원에 비해 더 많은 기간 동안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3>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기초과정의 적정 시간(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30시간	3	3.8	25	33.3
60시간	52	66.7	32	42.7
120시간	17	21.8	13	17.3
180시간	4	5.1	5	6.7
360시간	2	2.6	0	0.0
계	78	100.0	75	100.0

5)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심화과정

교육청 주관으로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40시간) 운영에 대한 설문 응답은 <표 IV-14>와 같다. <표 IV-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82.0%가 '확대 실시해야한다'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6.7%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적당하다’에 46.7%, ‘확대 실시해야한다’에 41.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특수교사가 공익근무요원보다 심화과정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표 IV-14>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심화과정(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확대 실시해야한다	64	82.0	31	41.3
적당하다	13	16.7	35	46.7
축소 실시해야한다	1	1.3	9	12.0
계	78	100.0	75	100.0

6)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과정의 만족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과정이 실제 업무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응답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65.5%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26.9%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51.9%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4.7%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시·도 교육청 주관 연수를 이수한 공익근무요원의 절반만이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34.7%로 나타났다.

<표 IV-15>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과정 만족도(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매우 도움이 된다	3	3.8	8	10.7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51	65.5	39	51.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	26.9	26	34.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3.8	2	2.7
계	78	100.0	75	100.0

7) 공익근무요원 배치·운영의 장점

특수교육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운영의 장점을 묻는 설문의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53.8%

가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30.9%가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에 응답하였다.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에 40.0%,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을 돕는다’에 36.0%가 응답하였다.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의 장점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을 돕는 것을 가장 높은 장점으로 인식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 것에 가장 많은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표 IV-16> 공익근무요원 배치·운영의 장점(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	24	30.9	30	40.0
장애아동의 수업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학교생활의 참여정도를 높인다	6	7.7	9	12.0
특수교사나 통합교사의 학습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보조 한다	3	3.8	5	6.7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이동이나 교외활동(현장학습, 사회적응훈련)을 돕는다	42	53.8	27	36.0
기 타	3	3.8	4	5.3
계	78	100.0	75	100.0

3.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1)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의 46.1%는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9.5%가 ‘등·하교 지도 및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 ‘학생의 일과(수업)시간에만 근무’에 12.8%가 응답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36.0%는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에, 그 다음으로 ‘학생의 일과(수업)시간에만 근무’에 26.7%, ‘등·하교 지도 및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에 24.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교원과 동일한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7>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학생의 일과(수업) 시간에만 근무	10	12.8	20	26.7
등·하교 지도 및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	23	29.5	18	24.0
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만(시간제) 근무	8	10.3	10	13.3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	36	46.1	27	36.0
기 타	1	1.3	0	0.0
계	78	100.0	75	100.0

2)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관리 방법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관리 수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응답 분석결과는 <표 IV-18>과 같다. 공익근무요원의 적절한 업무관리 방법에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특수교사들은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67.9%, 공익근무요원은 42.7%가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응답하였다. 즉, 담당 특수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업무일지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IV-18>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관리 방법(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	53	67.9	32	42.7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관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8	10.3	24	32.0
교장(감) 또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관리하고 주간이나 월간 일지로 작성함	15	19.2	12	16.0
기 타	2	2.6	7	9.3
계	78	100.0	75	100.0

3)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관리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관리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각각 33.3%, 32.0%가 교육청에서 선발 및 배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선발 및 배치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19>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관리 방법(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배치 및 관리	10	12.8	20	26.7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	19	24.4	11	14.6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급)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	22	28.2	18	24.0
교육청에서 선발 및 배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26	33.3	24	32.0
기 타	1	1.3	2	2.7
계	78	100.0	75	100.0

4)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효과적인 영역

공익근무요원제가 어느 영역에서 장애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를 묻는 설문 결과 <표 IV-20>과 같다. <표 IV-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1순위로 24.3%가 현장학습에 도움, 2순위로 23.0%가 신변처리에 도움, 3순위 25.6%로 현장학습의 도움이라고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1순위로 22.6%가 문제행동 관리, 2순위로 22.6%가 현장학습에 도움, 3순위로 26.8%가 문제행동 관리라고 응답하였다. 특수교사는 전체적으로 현장학습 도움과 신변처리 도움에 효과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문제행동관리와 현장학습 도움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0>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효과적인 영역(N=153)

항 목	특수 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우관계 형성	4	5.1	1	1.3	1	1.3	8	10.7	0	0.0	3	4.0
생활지도(학교규칙 준수)	2	2.6	8	10.3	5	6.4	5	6.7	8	10.7	10	13.3
학교 내 이동	11	14.1	5	6.4	12	15.4	12	16.0	5	6.7	4	5.3
학습자료 제작	1	1.3	4	5.1	6	7.7	0	0.0	0	0.0	4	5.3
현장학습 도움	19	24.3	13	16.7	20	25.6	12	16.0	17	22.6	10	13.3
개별화 수업보조	7	9.0	8	10.3	9	11.5	9	12.0	14	18.7	3	4.0
문제행동 관리	13	16.7	15	19.2	8	10.3	17	22.6	13	17.3	20	26.8
신변처리 도움	14	17.9	18	23.0	9	11.5	7	9.3	12	16.0	10	13.3
식사지도	6	7.7	5	6.4	6	7.7	5	6.7	5	6.7	11	14.7
통학지도	0	0.0	1	1.3	2	2.6	0	0.0	1	1.3	0	0.0
기타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78	100.0	78	100.0	78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 음영부분: 각 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항목.

5)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

학교에서 안전관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응답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책임한계에 대한 응답에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 씩 책임'에 34.6%가 응답하였고,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과 '모든 안전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에 각각 21.8%가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학생을 맡는 동안 공익근무요원이 책임'에 40.0%가 응답하였고,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씩 책임'과 '모든 안전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에 각각 24.0%가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과 책임의 한계에 대한 응답 결과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과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표 IV-21>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	17	21.8	30	40.0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씩 책임	27	34.6	18	24.0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책임	8	10.3	4	5.3
모든 안전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	17	21.8	18	24.0
기 타	9	11.5	5	6.7
계	78	100.0	75	100.0

6) 공익근무요원의 평가자

공익근무요원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두집단의 응답 결과는 <표 IV-22>과 같다. <표 IV-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73.1%가 특수교사에 응답하였으며, 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 20.5%, 학교장에 3.8%순으로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특수교사에 86.7%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장과 교육청에 각각 5.3%로 응답하였다.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담당특수교사가 평가한다'는 의견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이라고 응답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학교장과 교육청이라고 하였다.

<표 IV-22> 공익근무요원의 바람직한 평가자(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교육청	0	0.0	4	5.3
학교 개별화 교육운영위원회	16	20.5	0	0.0
학교장	3	3.8	4	5.3
특수 교사	57	73.1	65	86.7
기 타	2	2.6	2	2.7
계	78	100.0	75	100.0

7) 공익근무요원 배치장소

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내 배치 장소로 가장 적절한 항목에 대한 설문 응답은 <표 IV-23>과 같다. <표 IV-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교실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에 응답한 경우, 교실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보조하되 수업이 끝난 후에는 특수학급 교실이 아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3> 공익근무요원의 적절한 배치장소(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교무실	6	7.7	4	5.3
행정실	11	14.1	5	6.7
교 실	48	61.5	46	61.3
기 타	13	16.7	20	26.7
계	78	100.0	75	100.0

8)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자세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표 IV-24>와 같다. <표 IV-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1순위와 2순위가 각각 32.1%와 21.9%로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순위로 23.2%가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과 몸짓 표정을 짓는다는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1순위 32.0%가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

나 필요,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한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35.3%가 장애학생에게 대신 해주기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3순위는 24.1%가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4>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근무자세(N=153)

항 목	특수 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15	19.2	14	17.9	4	5.1	10	13.3	8	10.7	16	21.3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한다	23	29.4	9	11.5	7	9.0	24	32.0	17	22.7	11	14.7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한다	25	32.1	17	21.9	16	20.5	12	16.0	16	21.3	18	24.1
수업상황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 방식이나 발생된 여러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1	1.3	3	3.8	9	11.5	2	2.7	1	1.3	7	9.3
장애학생에게 대신 해주기 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2	2.6	14	17.9	11	14.1	19	25.4	19	25.3	7	9.3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과 몸짓 표정을 짓는다	7	9.0	2	2.6	18	23.2	3	4.0	6	8.0	8	10.7
교사, 학부모, 학교 관련자 등의 주변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혹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 한다	1	1.3	6	7.7	4	5.1	0	0.0	2	2.7	1	1.3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판단하고 의심이 나면 교사에게 질문 한다	4	5.1	13	16.7	9	11.5	4	5.3	6	8.0	7	9.3
기 타	0	0.0	0	0.0	0	0.0	1	1.3	0	0.0	0	0.0
계	78	100.0	78	100.0	78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 음영부분: 각 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항목.

9) 공익근무요원과 지원영역별 활동계획

공익근무요원과 지원 영역별 활동계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있는지의 설문에 대한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1회’에 47.4%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하지 않는다’에 34.6%, ‘2회’와 ‘3회 이상’에 9.0%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하지 않는다’에 38.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회’에 22.7%, ‘3회 이상’에 20.0%로 나타났다.

<표 25> 공익근무요원과 지원영역별 활동계획(N=153)

항 목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빈도	%	빈도	%
하지 않는다		27	34.6	29	38.6
()회 정도 한다	1회	37	47.4	17	22.7
	2회	7	9.0	14	18.7
	3회 이상	7	9.0	15	20.0
계		78	100.0	75	100.0

4. 공익근무요원 운용에 대한 기타 의견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운용에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1) 특수교사 의견

- ① “장애 학생들을 보살피는 일에서는 자발성이 필수이므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시 소양이나 자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배치되었으면 한다.”
- ② “행정보조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으므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행정실에서 필요한 일은 하는 경우가 많고 교수-학습자료 제작이라든가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교사만의 몫이고 수업시간의

- 의 시간은 행정보조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 ③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학생들이 통합학급 수업을 받을 시 지원을 하거나 식사지도, 등·하교 지도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업무만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은 학교의 행정 업무에서의 지원도 학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④ “특수교사 중 여성이 다수인 현실에서 문제생동이 심한 아동들의 지도 시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행동을 보일 때 단순히 힘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 ⑤ “장애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 의지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특수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고 교사를 넘어 자신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무력으로 대처하는 행동 또한 연수를 통한 장애 이해교육과 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 ⑥ “공익근무요원이 학생의 지도 과정에서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공익근무요원이 사비로 처리하는 데 이런 경우 학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학교 측과 공익근무요원 간의 치우나 고충에 대한 분기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상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⑦ “공익근무요원 배치 전 인성교육, 특수교육 및 장애아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근무 태도에 관한 연수가 강화 되어야 하고 특수학급이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교육 후 학교에 배치하여 지도교사와 공익근무요원간 상호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⑧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역할에 선을 분명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도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교사의 역할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마음자세이다.”

2) 공익근무요원의 의견

- ① “특수학교에 배치 전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② “현재 대부분의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 근무에 투입이 됩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한 교육을 다녀왔지만 그 이후 별다른 교육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 학급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 문제행동 관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연구가 확대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 ③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학교에 배치되었지만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과 행정요원의 업무 사이에 역할 분담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④ “부대에서 훈련 받고 바로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2~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특수학급 환경과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어떤 지원과 어떻게 보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임무를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V. 논의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관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회수하여 광주광역시 특수학교(급)의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후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연구문제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및 역할

공익근무요원의 학력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특수교사는 대학 졸업에 37.2%, 전문대학 졸업에 28.2%가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들은 고등학교 졸업에 40.0%, 대학 졸업에 24.0%가 응답하여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 보다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교사집단, 행정가 집단 및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된 강경숙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강경숙 등(2002)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의 74.2%가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으로 전문대학 이상을 요구하였다. 강경숙 등(2002)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보조원의 배치를 장애 학생의 학업과 직접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이 통합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일반학급 수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지원과 독립적인 생활을 촉구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또한 특수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에도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특수교육보조원에게 기대하는 주된 역할이 직접 학생을 교육하기보다는 특수교사와 통합학급의 수업보조 업무이며 공익근무요원의 학력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경우, 자칫 현장교사와의 동등한 학력으로 같은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여 기존의 체제에 대해 부담을 주는 요인이 문제로 새롭게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고등학교 졸업에 40.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집 특성상 연령이 20~24세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적절한 사람은 두 집단 모두 아동 교육관련 전공자와 사회복지관련 전공자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강경숙 등(2002), 김광수(2006), 김현정(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없었으며 특수교사는 91.0%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89.3%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이 적절한 이유의 설문에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이 적절하다고 답하여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간의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설문에서 ‘아니오’에 답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칭을 묻는 설문에는 10.7%가 ‘특수교육 보조 교사’, ‘도우미 선생님’라고 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보조교사라는 명칭보다 보조원이라는 명칭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며 강경숙 등(2002)은 보조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급에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즉 두 명의 교사가 공존하여 역할에 따른 마찰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보조원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역할은 각기 그 역할에 따라 명칭이 차이를 만들어 낸다. 특수교사는 보조원의 역할이 단지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명칭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 요구 아동에게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장면에서 담당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육의 주도자가 아니라 학생의 개인적 욕구 등을 지원하고 문제 행동을 관리하며 특수교사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은 보조교사가 아닌 특수교육보조원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강경숙 등, 2002).

공익근무요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을 가장 우선적인 자질로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을 중요한 자질로 인식하였다. 이는 강경숙 등(2002), 김현정(2008), 변성희(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김현정(2008)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을 가장 우선순위로 인식하였고 그 다음 순위로 문제행동 관리 지원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로 인식하였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을 장애아동을 보조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질로 두 집단 모두 인식하였다. 변성희(2006)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질로 인식된 항목인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은 장명수(2006)의 연구에서도 장애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제행동의 관리지원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이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강경숙·김용옥, 2004). 이에 변성희(2006)는 보조원들이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중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적용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를 인식하였고 이는 김광수(2006), 김현정(2008), 윤경희(2003), 이충무(2005)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두 집단 모두 교수활동 중에 학생의 행동을 기록하고 교사와 의사소통하기와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호작용, 비장애 학생과의 관계형성과 같은 상호작용의 지원보다는 적용행동(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문제행동 관리, 수업보조하기와 같은 학교생활에서 외적인 역할을 보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간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 1순위로 공익근무요원의 75.7%가 '갈등 경험 없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특수교사는 38.9%만이 '갈등 경험 없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특수교사의 경우 이동 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교실이동, 현장학습 지원, 통학보조, 안전보호 등)과 문제행동 관리지원, 교수-학습활동(예: 수업보조, 학습자료 제작)지원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이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간의 역할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데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두 집단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있어서 김주영(2001)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을 수업지원, 현장학습 지원, 자료제작 지원, 학생보호 신변관리 등 어디까지나 특수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장애학생을 지원할 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명확한 한계와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특수교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교수-학습활동이나 이동과 안전생활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은 문제행동 관리지원에 갈등경험으로 응답하여 장애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중재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한 연수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관련된 상담 대상자를 묻는 설문에는 1순위에 특수교사는 ‘타 학급 특수교사’, 공익근무요원은 ‘기타’로 담당 특수교사와 상담을 한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에 역할과 관련된 상담 대상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의견의 차이와 어려움 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대화하여 의사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해야 한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에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하며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한다고 응답하여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데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2.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양성 교육방법으로 두 집단 모두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는 방법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속해 있는 학급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사가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에 응답한 것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 이수만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자질과 장애학생을 보조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이는 김현정(2008), 변성희(2006), 이인순(2005)의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속해 있는 학급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특수교육보조원의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도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도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보조원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박미경·강경숙 2004).

공익근무요원이 받아야 할 연수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개를 순위 선정한 결과,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은 장애유형별 특징 이

해, 문제 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적응 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관리, 의사소통기술이 연수내용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를 1순위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김광수(2006), 윤경희(2003), 이충무(2005)의 선행 연구와 같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보조하고 장애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며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시 연수내용으로 장애유형별 특징이해를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 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과잉행동이나 자리이탈 등 심한 문제행동 그리고 학업장면에서의 심한 문제상황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인력이 교사 외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지도 시 보조역할, 현장학습보조, 특별활동보조, 학습자료, 제작보조 등 질 높은 연수내용은 장애아동을 중재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충무, 2005). 이러한 실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연수내용에서 적응기술과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전략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내용은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임기형태에 대해서는 한년별(1년) 임기에 특수교사 97.4%, 공익근무요원은 77.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학교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복무기간이 2년 2개월로 정해져있어 유급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임기 형태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대부분의 학급 운영과 교육계획이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임기는 1년 단위가 가장 적절하며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공익근무요원의 임기를 학년별(1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받는 직무연수가 40시간이 적절 하는지에 대한 설문 에 특수교사는 60시간에 66.7%, 다음으로 120시간에 21.8%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60시간에 42.7%, 다음으로 30시간에 33.3%의 순으로 응답하여 특수교사가 공익근무요원에 비해 더 많은 기간 동안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현정(2008), 변성희(2006), 윤경희(2003), 이충무(2005)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에 비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양성·배양되기를 바라며 공익근무요원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연수 40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설문 에 특수교사는 ‘확대 실시해야 한다’에 82.0%, 다음으로 ‘적당하다’에 16.7%가 응답하

였고 공익근무요원은 ‘적당하다’에 46.7%, ‘확대 실시해야한다’에 41.3%가 응답하였다.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연수 40시간 보다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문항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이후에도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장애 학생의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는 이론뿐 아니라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 적용기술과 같은 실질적인 전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직무연수 40시간이 적당하다는 문항에 46.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41.3%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직무연수가 실제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에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연수 기회의 확대와 관리체계의 정립이 공익근무요원의 질 높은 교육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운영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설문에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현장학습, 사회적응훈련)을 돕는다’와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장애가 점차 중도·중복화 됨에 따라 통합학급의 일반교사 1인이 전 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고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힘든 교육장면에서 교외활동과 사회적응 활동을 지원하고 일반학급의 수업 시 문제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에는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 시간대에 근무’에 높은 응답을 하여 공익근무요원이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광수(2006), 김현정(2008), 이인숙(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관리에 대한 설문에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교사가 보조원의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으나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교장(감) 또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관리하고 주간이나 월간 일지로 작성함’에 응답하였다. 이는 특수교사들이 말

은 업무가 많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일일이 지시한다거나 직접 업무일지를 기록하는 것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공익근무요원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활동해 주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결과는 강경숙 등(2002), 김광수(2006), 김현정(2008), 변성희(2006)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공익근무요원은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관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에 응답하였는데 이는 교장(감) 또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관리하는 것보다 특수교사가 관찰하고 관리함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을 갖춘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고 직무연수를 거쳐 기관에 배치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특수교육의 질과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 중요하다. 인사관리에 적절한 방법에 대한 설문에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교육청에서 선발 및 배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선발 및 배치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선발 및 배치는 학교에 필요한 인원을 교육청이 병무청에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선발·배치는 교육청에서 하고 관리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익근무요원제가 어느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특수교사는 '현장학습 도움'에 24.3%, 다음으로 '신변처리 도움'에 23.0%, '현장학습 도움'에 25.6%순으로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문제행동관리'에 22.6%, '현장학습 도움'에 22.6%, '문제행동 관리'에 26.8%의 순으로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정규교사의 적절한 훈련과 감독 하에 특수교육보조원이 학생지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원칙과 전인진과 박승희(2001)의 연구에서 장애아동에게 요구되어지는 10가지 중 개인적 요구지원, 이동지원, 행동지원 등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은 장애학생 지원에 있어서 어려운 개인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는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학생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에 특수교사는 34.6%가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씩 책임', 21.8%는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과 '모든 안전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40.1%가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 24.0%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씩 책임'과 '모든 안전의 문제는 학교의 관계자가 책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수교사의 경우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씩 책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두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공익근무요원의 바람직한 평가자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간의 인식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특수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경숙 등(2002), 김광수(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내 배치 장소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모두 특수학급 교실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기타에 응답한 특수교사의 경우 공익근무요원과 많은 시간을 한 공간에서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특수학급 교실이 아닌 특별실이나 교무실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인순(2005)은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교 실정에 따라 통합학급 교실과 특수학급 교실을 이동하며 장애학생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학생이 하교를 한 이후 시간에도 특수학급 교실에서 특수교사와 함께 상주하며 퇴근할 때까지 업무를 보고 있어 불편함이 야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학교 내 별도의 마련된 휴식 공간이 없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특수교육보조원의 독립된 공간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근무 자세에 대한 문항에서는 특수교사는 1순위와 2순위 중복응답으로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 한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과 몸짓 표정을 짓는다’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 한다’, 다음은 ‘장애학생에게 대신 해주기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한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에게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해야 함과 함께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과 몸짓 표정을 짓는다가 근무자세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태도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들의 나이가 20대 전반이고 사회적 경험이 미숙한 측면이 반영된 결과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하며 장애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근무자세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익근무요원과 지원영역별 활동계획 수립에 대한 설문에 특수교사는 1 '회'에 47.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하지 않는다'가 34.6% 응답하였다. 반면에 공익근무요원은 '하지 않는다'에 38.6%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회'에 22.7%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현정(2008)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김현정(2008)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영역별 활동계획을 '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이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업무를 매일 지시함으로써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및 역할에 있어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간의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공익근무요원의 학력으로 특수교사는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아동교육관련·사회복지관련 전공자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고등학교를 졸업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아동교육관련·사회복지관련 전공자가 적절한 학력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의 자격을 학력에 우선하여 장애관련 경험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애관련 경험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의 적절성에 대해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명칭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그 이유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해 두 집단의 인식에 차이는 없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질로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이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 역할로는 문제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응기술을 관리하고 통합교육현장에서 수업보조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한 사전연수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에 대한 기초적 이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실제적인 교육이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관련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갈등 사항에 두 집단 모두 갈등 경험 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특수교사는 이동지원 및 안전생활을 지원하고 문제 행동 관리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하는데 갈등을 경험했으며 공익

근무요원은 문제행동 관리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하는데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대상으로 특수교사는 타 학급특수교사라고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담당 특수교사라고 응답하였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은 특수교사는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은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한다고 하였다.

둘째, 공익근무원의 교육 및 배치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간의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익근무요원의 양성 교육방법으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연수 내용으로 특수교사는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 적응기술 관리를 가장 중요한 연수내용으로 인식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의 임기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학년별(1년)로 고용하며 직무연수의 기초과정으로 60시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40시간 보다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연수가 특수교육현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며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과 수업보조 시,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이 심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 일이 공익근무요원 배치·운영의 장점으로 인식 하였다.

셋째,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비교 결과 두 집단 모두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며 업무관리는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하며 인사관리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교육청에서 선발 및 배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영역에 특수교사는 현장학습 도움과 신변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문제행동 관리와 현장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효과적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학습외적인 문제행동 관리나 현장학습에 특히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학교에서 안전관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에 특수교사는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씩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책임한계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공익근무요원의 바림직한 평가자에 대해서 특수교사와 공익

근무요원 모두 특수교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 특수교사가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장소로 두 집단 모두 특수학급 교실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로 특수교사는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과 몸짓 표정을 짓는 태도적인 특면을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하며 장애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근무자세로 인식하였다. 공익근무요원과의 지원영역별 활동계획은 특수교사는 ‘1회’, 공익근무요원은 ‘하지 않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이는 특수교사가 지원영역별 활동을 계획하여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특수학교(급)의 교사와 공익근무요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2006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고 있으나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연구로 유급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역할 수행 실태, 활용 실태,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전연수와 직무연수가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달성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연수시간의 확대와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 문제행동 관리 및 적응 행동(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연수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숙·강영택·김성애·정동일(2002).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 방안 연구. 경기도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강경숙·김용욱(2004). 특수교육보조원의 실태 및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 *특수교육연구*, 11(2), 131-155.
- 강경숙·이인순(2006). 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1(1), 329-352.
- 김선영(2006).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조사.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영·이미선·이유훈·최세민(2001). 중등 특수학급 운영 개선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김영희(2003). 통합학급 보조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정(2008).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 비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광주·전남 병청부(2006). 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 <http://www.mms.go.kr>.
- 광주·전남 병무청(2008a).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정보. <http://gwangju.mma.go.kr>
- 광주·전남 병무청(2008b). 장애학생 지원. 2008 직무교육교재. 광주:광주·전남 병무청
- 교육과학기술부(2008a). 200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서울: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b).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지원계획. 특수교육보조원 시·도 연수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c).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2000).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자료. 서울: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3). 제2차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03~'07). 서울:교육인적자원부.
- 국립특수교육원(2002a).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 방안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2002b).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방안. 직무연수 제14기 특수학교(급) 교사과정.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http://iedu.kise.go.kr>
- 군포의왕교육청(2006). 2006년도 특수교육보조원 선정·배치 위한 기초자

- 료.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 박미경·강경숙(2004).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9(3), 73-94.
- 박승희·강영택·박은혜·신현기·이효신·정동영(2001).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03-2007)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박승희·장해성·나수현·신소니아(2007). *장애관련종사자의 특수교육 입문*. 서울 : 학지사.
- 박은혜(2002). 지체부자유아 교육연구의 최근 동향: 중도 지체부자유 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9(1), 137-155.
- 법제처(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http://www.moleg.go.kr>
- 변성희(2006).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정애(2005). 유·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인식: 현 정부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재석(2007). 공익근무 특수교육보조원 운영방법 및 과제. *현장특수교육* 3·4, 18-23.
- 이경옥(2005).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의 학습태도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 이소연·박은혜(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 학지사.
- 이윤숙·김수연(2007).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교수적 지원의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2(1), 117-144.
- 이인순(2005). 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명수(2006)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한 통합학급교사, 특수학급교사,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 비교 조사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인진·박승희(2001). 보조원의 역할 규명과 순기능 및 역기능에 관한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36(3), 233-265.
- 정명근(2004).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정영숙(2003).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학급의 교사와 아동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최옥선(2007). 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의 실제. **현장특수교육**, 3·4, 7-17.

통합교육학회(2006).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입문 통학교육**. 서울 : 학지사.

부 록

설문지

『특수교육보조원의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 비교』

(특수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힘쓰시느라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특수교육 분야에서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제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성공적인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제시하고 있는 각 문항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6월 02일까지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반송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수교육 발전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19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미숙 드림
지도교수 이승희

이 설문지의 내용과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502-708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우미@ 105동 705호

연락처 : 017-617-0799, E-mail : jang-6707@hanmail.net

● 응답 요령

1. 각 문항의 응답에 해당 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응답항목 답 앞 _____ 부분에 $\sqrt{\quad}$ 로 표시해 주시고 기타에 응답하시는 경우 기타: _____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2.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는 문항에서는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개의 항목을 선정한 후 번호 앞 _____ 부분에 1,2,3으로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I.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및 역할

1. 공익근무요원의 학력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고졸
_____ ② 전문대졸
_____ ③ 대졸
_____ ④ 기타: _____
2.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아동교육 관련 전공(경험)자
_____ ② 장애아동 부모
_____ ③ 사회복지 관련 전공(경험)자
_____ ④ 관계없이 임용절차에 합격된사람
_____ ⑤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치료 관련 전문가
_____ ⑥ 기타: _____
3.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귀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칭을 써 주십시오: _____)
4. (3번의 ①에 응답한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_____ ② 특수교육보조원이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을 요구하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_____ ③ 기존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학,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_____ ④ 기타: _____
5. 특수교육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것 세 개를 선정한 후 순위 1,2,3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_____ ① 장애 원인, 개념 및 분류에 대한 이해
_____ ② 건강 및 의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_____ ③ 인간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_____ ④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_____ ⑤ 기본적인 학습(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_____ ⑥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_____ ⑦ 컴퓨터 활용 능력

- ⑧ 교육관련 법령 및 행정적 사무 처리에 대한 이해
- ⑨ 장애보상 치료활동(언어, 작업, 물리, 심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 ⑩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
- ⑪ 기타: _____

6.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중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세 개를 선정한 후 순위 1,2,3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 ① 수업보조하기
- ② 교수활동 중에 학생의 행동을 기록하고 교사와 의사소통하기
- ③ 교수-학습 활동지원 자료 준비 및 작성
- ④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
- ⑤ 문제행동 관리
- ⑥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호작용
- ⑦ 비장애 학생과의 관계형성 지원
- ⑧ 교사의 행정업무 지원
- ⑨ 보조 장비 사용(예: 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 지원
- ⑩ 기타: _____

7.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중에서 역할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과 갈등을 경험한 항목에 모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① 갈등 경험 없음
- ② 교수-학습활동(예: 수업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 ③ 교사의 사무업무 지원
- ④ 이동 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교실이동, 현장학습 지원, 통학보조, 안전보호 등)
- ⑤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
- ⑥ 문제행동 관리지원
- ⑦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등) 지원
- ⑧ 보조 장비 사용(예: 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 지원
- ⑨ 기타: _____

8.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을 하십니까?

- ① 학교장이나 교감
- ② 타 학급 특수교사
- ③ 타 학급 특수교육보조원
- ④ 학부모
- ⑤ 기타: _____

9. 공익근무요원에게 역할수행을 지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①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
- ② 보조원이 자신의 일일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
- ③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
- ④ 기타: _____

II.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배치

10. 공익근무요원의 교육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_____ ②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
 _____ ③ 인력개발센터주관의 특수교육보조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_____ ④ 특수교육보조원이 속해 있는 학급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 받게함.
 _____ ⑤ 기타: _____
11. 공익근무요원이 받아야 할 연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다섯 개를 선정한 후 순위 1,2,3,4,5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_____ ①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
 _____ ②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방법
 _____ ③ 치료교육의 이론과 실제
 _____ ④ 특수학교(급)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의 이해
 _____ ⑤ 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천원칙의 이해
 _____ ⑥ 장애인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_____ ⑦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
 _____ ⑧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방법(예:인슐린 투입, 심폐소생술, 현장학습)
 _____ ⑨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관리
 _____ ⑩ 착석 및 수업태도 지도방법
 _____ ⑪ 의사소통기술
 _____ ⑫ 발달심리학
 _____ ⑬ 컴퓨터 활용실무
 _____ ⑭ 기타: _____
12. 공익근무요원의 임기는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학년별(1년) _____ ② 학기별(6개월) _____ ③ 분기별(3개월)
13. 교육청 주관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받는 직무연수는 40시간입니다. 연수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30시간 _____ ② 60시간 _____ ③ 120시간
 _____ ④ 180시간 _____ ⑤ 360시간 이상
14. 교육청 주관으로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확대 실시해야한다. _____ ② 적당하다. _____ ③ 축소 실시해야한다.
15.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과정이 실제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매우 도움이 된다. _____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_____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공익근무요원 배치·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
- _____ ② 장애아동의 수업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학교생활의 참여정도를 높인다.
- _____ ③ 특수교사나 통합교사의 학습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 _____ ④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이동이나 교외활동(현장학습, 사회적응훈련)을 돕는다.
- _____ ⑤ 기타: _____

Ⅲ.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17.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학생의 일과(수업) 시간에만 근무
- _____ ② 등·하교 지도 및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
- _____ ③ 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만(시간제) 근무
- _____ ④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
- _____ ⑤ 기타: _____

18.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
- _____ ②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관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 _____ ③ 교장(감) 또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관리하고 주간이나 월간 일지로 작성함.
- _____ ④ 기타: _____

19.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배치 및 관리
- _____ ②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
- _____ ③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급)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
- _____ ④ 교육청에서 선발 및 배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 _____ ⑤ 기타: _____

20. 공익근무요원제가 다음 중 어느 영역에서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 세 개를 선정한 후 순위 1,2,3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 | | |
|-------------------|-----------------------|
| _____ ① 교우관계 형성 | _____ ② 생활지도(학교규칙 준수) |
| _____ ③ 학교 내 이동 | _____ ④ 학습자료 제작 |
| _____ ⑤ 현장학습 도움 | _____ ⑥ 개별화 수업보조 |
| _____ ⑦ 문제행동 관리 | _____ ⑧ 신변처리 도움 |
| _____ ⑨ 식사지도 | _____ ⑩ 통학지도 |
| _____ ⑪ 기타: _____ | |

21. 학생 안전관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 _____ ①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
_____ ②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씩 책임
_____ ③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책임
_____ ④ 모든 안전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
_____ ⑤ 기타: _____

22. 공익근무요원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교육청
_____ ② 학교 개별화 교육운영위원회
_____ ③ 학교장
_____ ④ 특수 교사
_____ ⑤ 기타: _____

23. 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내 배치장소로 가장 적당한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교무실
_____ ② 행정실
_____ ③ 교실
_____ ④ 기타: _____

24.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세 개를 선정
한 후 순위 1,2,3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
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 _____ ①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_____ ②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한다.
_____ ③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한다.
_____ ④ 수업상황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발생된
여러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_____ ⑤ 장애학생에게 대신 해주기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준다.
_____ ⑥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과 몸짓 표정을 짓
는다.
_____ ⑦ 교사, 학부모, 학교 관련자 등의 주변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혹
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_____ ⑧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판단하고
의심이 나면 교사에게 질문한다.
_____ ⑨ 기타: _____

25. 공익근무요원과 지원영역별 활동계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계십니까?

- _____ ① 하지 않는다. _____ ② ()번 정도 한다.

※ 이상의 질문 항목이외에도 의견 개진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래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문지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비교」

(공익근무요원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힘쓰시느라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특수교육 분야에서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제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특수교사와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귀하의 의견을 듣고 성공적인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제시하고 있는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6월 02일까지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반송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수교육 발전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19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미숙 드림
지도교수 이승희

이 설문지의 내용과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502-708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우미@ 105동 705호

연락처 : 017-617-0799, E-mail : jang-6707@hanmail.net

●응답 요령

다음은 귀하에 대한 기초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골라 그 번호 앞 _____에 √ 표 해주십시오.

<기초사항>

1. 귀하의 연령:

- _____ ① 20세 미만
_____ ② 20 ~ 24세
_____ ③ 25 ~ 29세
_____ ④ 30 ~ 34세

2.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 _____ ① 없음 _____ ② 치료교사 _____ ③ 보육교사
_____ ④ 사회복지사 _____ ⑤ 기타:_____

3.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 _____ ① 6개월 미만
_____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_____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_____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_____ ⑤ 3년 이상 ~ 4년 미만
_____ ⑥ 4년 이상 ~ 5년 미만

4.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과정:

- _____ ① 초등학교 _____ ② 중학교 _____ ③ 고등학교

5.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학급의 유형:

- _____ ① 일반학급 _____ ② 특수학급 _____ ③ 특수학교 학급

6. 담당학급 학생들의 주된 장애 정도:

- _____ ① 경도(mild) _____ ② 중등도(moderate) _____ ③ 중도(severe)

7. 공익근무요원 근무 이전 장애인을 접해본 경험 유·무:

- _____ ① 유 _____ ② 무

- _____ ⑧ 교육관련 법령 및 행정적 사무 처리에 대한 이해
- _____ ⑨ 장애보상 치료활동(언어, 작업, 물리, 심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 _____ ⑩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
- _____ ⑪ 기타: _____

6.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중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세 개를 선정한 후 순위 1,2,3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 _____ ① 수업보조하기
- _____ ② 교수활동 중에 학생의 행동을 기록하고 교사와 의사소통하기
- _____ ③ 교수-학습 활동지원, 자료 준비 및 작성
- _____ ④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
- _____ ⑤ 문제행동 관리
- _____ ⑥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호작용
- _____ ⑦ 비장애 학생과의 관계형성 지원
- _____ ⑧ 교사의 행정업무 지원
- _____ ⑨ 보조 장비 사용(예: 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 지원
- _____ ⑩ 기타: _____

7.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중에서 역할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특수교사와 같음을 경험한 항목에 모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갈등 경험 없음
- _____ ② 교수-학습활동(예: 수업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 _____ ③ 교사의 사무업무 지원
- _____ ④ 이동 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교실이동, 현장학습 지원, 통학보조, 안전보호 등)
- _____ ⑤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
- _____ ⑥ 문제행동 관리지원
- _____ ⑦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등) 지원
- _____ ⑧ 보조 장비 사용(예: 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 지원
- _____ ⑨ 기타: _____

8.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특수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을 하십니까?

- _____ ① 학교장이나 교감
- _____ ② 타 학급 특수교사
- _____ ③ 타 학급 공익근무요원
- _____ ④ 학부모
- _____ ⑤ 기타: _____

9. 특수교사가 역할수행을 지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_____ ①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
- _____ ② 보조원이 자신의 일일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
- _____ ③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
- _____ ④ 기타: _____

II.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배치

10. 공익근무요원의 교육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_____ ②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
 _____ ③ 인력개발센터주관의 공익근무요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_____ ④ 공익근무요원이 속해 있는 학급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받게함.
 _____ ⑤ 기타: _____
11. 공익근무요원이 받아야 할 연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다섯 개를 선정한 후 순위 1,2,3,4,5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_____ ①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
 _____ ②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방법
 _____ ③ 치료교육의 이론과 실제
 _____ ④ 특수학교(급)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의 이해
 _____ ⑤ 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천원칙의 이해
 _____ ⑥ 장애인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_____ ⑦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
 _____ ⑧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방법(예:인슐린 투입, 심폐소생술, 현장학습)
 _____ ⑨ 적응기술(신변처리, 착 탈의, 식사지도) 관리
 _____ ⑩ 착석 및 수업태도 지도방법
 _____ ⑪ 의사소통기술
 _____ ⑫ 발달심리학
 _____ ⑬ 컴퓨터 활용실무
 _____ ⑭ 기타: _____
12. 공익근무요원의 임기는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학년별(1년) _____ ② 학기별(6개월) _____ ③ 분기별(3개월)
13. 교육청 주관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받는 직무연수는 40시간입니다. 연수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30시간 _____ ② 60시간 _____ ③ 120시간
 _____ ④ 180시간 _____ ⑤ 360시간 이상
14. 교육청 주관으로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확대 실시해야한다. _____ ② 적당하다. _____ ③ 축소 실시해야한다.
15.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과정이 실제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매우 도움이 된다. _____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_____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공익근무요원 배치·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
- _____ ② 장애아동의 수업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학교생활의 참여정도를 높인다.
- _____ ③ 특수교사나 통합교사의 학습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 _____ ④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이동이나 교외활동(현장학습, 사회적응훈련)을 돕는다.
- _____ ⑤ 기타: _____

Ⅲ.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관리

17.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학생의 일과(수업) 시간에만 근무
- _____ ② 등·하교 지도 및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
- _____ ③ 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만(시간제) 근무
- _____ ④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
- _____ ⑤ 기타: _____

18.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
- _____ ②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관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 _____ ③ 교장(감) 또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관리하고 주간이나 월간 일지로 작성함.
- _____ ④ 기타: _____

19.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배치 및 관리
- _____ ②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
- _____ ③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급)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
- _____ ④ 교육청에서 선발 및 배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 _____ ⑤ 기타: _____

20. 공익근무요원제가 다음 중 어느 영역에서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 세 개를 선정한 후 순위 1,2,3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 | | |
|-------------------|-----------------------|
| _____ ① 교우관계 형성 | _____ ② 생활지도(학교규칙 준수) |
| _____ ③ 학교 내 이동 | _____ ④ 학습자료 제작 |
| _____ ⑤ 현장학습 도움 | _____ ⑥ 개별화 수업보조 |
| _____ ⑦ 문제행동 관리 | _____ ⑧ 신변처리 도움 |
| _____ ⑨ 식사지도 | _____ ⑩ 통학지도 |
| _____ ⑪ 기타: _____ | |

21. 학생 안전관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의 책임한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 ① 학생을 맡는 동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
 ②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절반씩 책임
 ③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책임
 ④ 모든 안전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
 ⑤ 기타: _____

22. 공익근무요원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청 ② 학교 개별화 교육운영위원회
 ③ 학교장 ④ 특수 교사
 ⑤ 기타: _____

23. 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내 배치장소로 가장 적당한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무실 ② 행정실
 ③ 교실 ④ 기타: _____

24.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세 개를 선정
한 후 순위 1,2,3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기타를 포
함하여 순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 ①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 가치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한다.
 ③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한다.
 ④ 수업상황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발생된
여러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⑤ 장애학생에게 대신 해주기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준다.
 ⑥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표현과 몸짓 표정을 짓는다.
 ⑦ 교사, 학부모, 학교 관련자 등의 주변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혹
시 기본이 나쁘더라도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⑧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판단하고
의심이 나면 교사에게 질문한다.
 ⑨ 기타: _____

25. 특수교사와 지원영역별 활동계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계십니까?

- ① 하지 않는다. ② ()번 정도 한다.

※ 이상의 질문 항목이외에도 의견 개진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래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번	20058206	과정	석사
성 명	한글: 이 미 숙 한문: 李 美 叔 영문: Misuk Lee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우미 @ 105동 705호				
연 락 처	017-617-0799 E-MAIL: jang-6707@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대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비교 영문: A comparison of perception on the use paraprofessional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ISP in Gwangju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 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 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2월

저작자 : 이 미 숙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